

KOTRA COUNTRY REPORT
KOTRA 국가정보

캐나다

I.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캐나다(Canada)
면적	9,984,670 km ²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2020년 11월 기준)
수도	오타와(Ottawa)
인구	38,180,001 명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2020년 11월 기준)
민족(인종)	영국계(33%), 프랑스계(14%), 독일계(10%), 기타 유럽계(15%), 아시아계(18%), 기타 아프리카계, 캐리비안계(10%) 등
언어	공용어(영어 58% 및 불어 21%), 기타(21%)
종교	천주교(39%), 기독교(28%), 무종교(24%), 기타(9%)
기후	중부내륙지방: 온대성 대륙성 태평양 대서양 연안: 해양성 북극권: 한대성
국가원수	국가원수: 영국여왕 Elizabeth II(1952년 2월 6일 즉위) 총독: Julie Payette(총리의 추천으로 국가원수가 임명 / 2017년 10월 2일 취임) 총리: Justin Trudeau(실권자 / 2015년 11월 4일 취임, 2019년 11월 20일 재취임)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963-01-14 (자료원 : 캐나다 외교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사회보장협정	1999-06-10	우리나라에서 캐나다로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6년 동안 캐나다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됨.	
한-캐나다 FTA	2015-01-01	FTA 발효 후 10년대 대부분(97.5%)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등의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한-캐나다 항공운송협정	2015-02-25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를 부여함.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2017-05-17	양국 간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및 혁신 관련 공동연구와 인력교류 진행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2017-11-16	최고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협정	

<자료원 : 대한민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캐나다 외교부, 중앙은행>

한국교민 수

241,750 명 (자료원 : 한국 외교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 1993년 한국과 캐나다는 『특별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다. 양국은 대북정책, 경제 및 통상, 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과 지지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 캐나다는 북한 핵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북한의 돌발적인 안보위협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단합

된 메시지 전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9년 6월 3일 캐나다 국방부(Department of National Defence and the Canadian Armed Forces)는 향후 2년간 'NEON 임무(Operation NEON)'를 통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매년 해상 초계기(오로라호)와 군함(리자이나호, 아스테릭스호)을 동아시아 지역으로 파견하고 있다.

- 2019년 6월 10일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짐 커(Jim Carr) 무역다변화장관은 유명회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과 캐나다산 카놀라 등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동 방문을 통해 캐나다 정부와 롯데마트는 매장 내 캐나다 농산물 및 농식품 매대의 확대 운영 등 협력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2019년 6월 28~29일까지 개최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성과평가와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플라스틱 오염 관련 해양 보호에 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대북제재를 통한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경제

-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농축산물, 광물자원 등 1차산업 품목과 제조업, 서비스업까지 교역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5년 1월 1일부 한국과는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한 바 있다. 이후 양국 간 경제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한-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 발효('17.5.17)에 따라 양국 간 항공·우주, 환경·에너지·청정기술, 생명과학, 정보통신(ICT), 인공지능(AI) 등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관련 협력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11월 15일, 한국과 캐나다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는 계약 체결국끼리 특정 날짜나 기간을 정해 만기 내에 미리 약속한 환율에 따라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의미한다. 한국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동 협정으로 상대국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하여 자국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캐나다 통화스와프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했던 협정과는 달리 사전에 한도를 정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만기가 특정되지 않는 상설계약이라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 2018년 9월 삼성물산은 온타리오 남부지역의 채텀켄트(Chatham-Kent)에 100MW 규모의 풍력발전소에 34개의 풍력 터빈 가동을 시작했다. 이는 연간 3만 5,000채의 주택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참고로 삼성은 온타리오전기위원회(IESO, Independent Electricity System Operator)와 20년 장기 전력구매 계약(FIT) 체결로 2010년부터 8년간 온타리오 주에 총 10개의 풍력 및 태양광 단지 조성을 완료했다.

- 2018년 삼성전자, LG전자는 각각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개소하였다. 캐나다는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외국 스타트업 유치에 적극적인 편으로, 앞으로 양국 간의 기술 및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2019년 5월 9일, 한-캐나다 FTA 발효 5주년을 맞이하여 주 토론토 총영사관, 온타리오 상공회의소(Ontario Chamber of Commerce), KOTRA 토론토 무역관과 함께 '한국-캐나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캐나다 투자청(Invest in Canada) 등 각계층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한국-캐나다 FTA 효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2020년 9월 24일, 주 토론토 총영사관, 온타리오 상공회의소(Ontario Chamber of Commerce), KOTRA 토론토 무역관은 제 3회 '한-캐나다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캐나다 고등연구원(CIFAR, Canadian Institute for Advanced Research)과 양국의 시가반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AI 기술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문화

- 한국과 캐나다는 1994년부터 관광 및 방문 목적으로 입국하는 양국 국민에 최대 6개월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2017년(확인

가능한 최신통계) 기준 관광, 출장, 유학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인은 17만 6,256명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30만 1,476명으로 집계되는 등 양국 간의 교류는 활발해지고 있다.

○ 2019년 2월 5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총리는 한국 설날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하였다.

○ K-Pop, K-Beauty, K-Food 등 한류 콘텐츠가 캐나다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K-Pop 아티스트들은 토론토, 밴쿠버 등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4대 영화제로 알려진 토론토 국제영화제(TIFF,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는 이병헌, 황정민 등 한국 유명배우와 감독이 방문해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한국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접한 현지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화장품과 한식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서 방영 중인 한인 이민가족의 삶을 그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은 아시아계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2019년 1월 시즌3이 방영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 2020년 KHF(Korean Harvest Festival)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10월 1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한인들에게 추석 축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더욱 캐나다 사회에 화합과 협력이 필요할 때임을 강조하였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6	2017	2018	2019	2020
경제성장률 (%)	1	3.17	2.01	1.65	-
명목GDP (십억\$)	1,528	1,650	1,716	1,736	-
1인당 GDP (PPP, \$)	46,132	48,385	50,057	51,586	-
1인당 명목 GDP (\$)	42,322	45,149	46,313	46,195	-
정부부채 (% of GDP)	114.1	109.2	108.4	108.1	-
물가상승률 (%)	1.4	1.6	2.3	1.9	-
실업률 (%)	7	6.3	5.8	5.7	-
수출액 (백만\$)	390,059.2	420,541.34	451,004.74	447,013.51	-
수입액 (백만\$)	402,498.12	432,818.69	459,964.45	453,312.38	-
무역수지 (백만\$)	-12,438.92	-12,277.35	-8,959.71	-6,298.87	-
외환 보유고 (백만\$)	82,718	86,625	83,926	85,297	87,322.57
이자율 (%)	0.5	1	1.75	1.75	0.25
환율 (자국통화)	1.33	1.3	1.29	1.33	1.4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캐나다 중앙은행, World Bank〉

경제 동향

○ 캐나다의 2019년 경제성장률은 기업투자, 기계 장비 소비의 지속된 감소 및 대외 수출/수입 감소(각각 0.9%, 1.4%)로 경기 성장이 둔화되며 전년 대비 0.36%p 하락한 1.65%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경제 성장 둔화에는 파이프라인 공사 중단, 철도 파업, 기후 악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 악영향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은 2020년 3월, 2019년 3, 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였다. 2019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CN Rail 노조파업, 기후 악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 미국 자동차 노조 파업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이유로 기존 발표(1.3%) 내용을 하향 조

정(1.1%)하였다. 2019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0.3%로 발표하였으며 이는 2016년 앨버타 주 대산불로 경제성장률이 2%대로 급락했던 이래 최저치를 기록한 수치이다.

○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은 3월 한 달간 세 번의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다. 2020년 첫 기준금리 발표일인 3월 4일, 2018년 10월 이후 지속 유지해오던 1.75%의 금리를 0.5%p 하향 조정하여 1.25%의 금리를 발표하였다. 이후 코로나 19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3월 13일, 3월 27일에 0.5%p씩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각각 0.75%, 0.25%를 발표하였으며 2020년 6월에는 경제 재개를 위해 0.25%의 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캐나다의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8.2%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률 하락은 가계소비 급락과 온타리오 주 교사 파업, 철도 봉쇄, 유가 폭락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2020년 5월 실업률은 13.7%로 캐나다 통계청 관측 이래(1976년)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주별로 상황은 상이하나 경제재개 가 시행됨에 따라 고용시장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며 10월에는 8.9%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

경제 전망

○ USMCA 체결(2020. 3.13.)로 무역 불확실성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 19의 글로벌 확산으로 경제성장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캐나다 중앙은행은 2020년 캐나다 경제성장률을 -7.8%로 예상하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 특히 각 주 정부의 비필수 업종 폐쇄 행정명령 등으로 문을 닫고 해고 조치를 단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며 노동시장의 수요가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월 20일 이후 전면적인 국경 폐쇄로 많은 부분을 외국(특히 미국) 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서는 노동문제뿐 아니라 이로 인한 농작물 생산, 수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020년 10월 4일 기준,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직 혹은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의 신청자 수는 약 2,700만명에 달하였다. 지난 3월 15일 부터 시행된 해당 혜택은 9월 26일자로 종료되어 기존 고용보험(EI, Employment Insurance)으로 자동전환되었다.

○ 캐나다의 최대 교역국인 미국이 코로나 19로 지속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너인 중국과의 무역 또한 감소하여 교역 부분에도 크게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96,440,399,002
2	중화인민공화국	15,825,076,048
3	영국	12,901,538,306
4	일본	8,085,365,295
5	멕시코	5,758,981,870
6	대한민국	3,303,838,500
7	인도	3,005,578,335
8	독일	2,959,240,177
9	프랑스	2,568,563,353
10	벨기에	2,425,747,24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18,570,257,596
2	중화인민공화국	18,185,909,910
3	영국	13,633,123,511
4	일본	9,120,762,046
5	멕시코	6,053,377,699
6	대한민국	4,085,366,288
7	인도	3,296,681,544
8	독일	3,094,367,075
9	벨기에	2,710,734,206

10	프랑스	2,625,903,438
----	-----	---------------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37,814,287,399
2	중화인민공화국	21,344,427,288
3	영국	12,606,301,995
4	일본	10,000,626,431
5	멕시코	6,346,968,070
6	대한민국	4,525,417,234
7	네덜란드	3,664,639,877
8	독일	3,629,030,335
9	인도	3,314,954,879
10	홍콩	3,009,234,321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336,993,120,200
2	중화인민공화국	17,493,567,693
3	영국	15,365,882,703
4	일본	9,485,291,578
5	멕시코	5,634,290,887
6	독일	4,696,193,601
7	대한민국	4,568,505,037
8	네덜란드	3,965,115,805
9	인도	3,699,340,498
10	캐나다	3,188,605,742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09,921,521,934
2	중화인민공화국	48,575,915,442
3	멕시코	25,040,057,856
4	독일	12,994,195,362
5	일본	11,919,695,724
6	대한민국	8,000,210,694
7	영국	6,230,431,162
8	이탈리아	5,688,655,989
9	프랑스	4,476,714,607
10	Other Asia, nes	3,831,311,498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22,572,821,843
2	중화인민공화국	54,652,254,719
3	멕시코	27,345,824,874
4	독일	13,856,526,567
5	일본	13,500,065,748
6	영국	6,859,983,154
7	대한민국	6,625,011,471
8	이탈리아	6,281,306,653
9	프랑스	4,771,841,442
10	Other Asia, nes	4,193,260,894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35,117,553,704
2	중화인민공화국	58,319,926,782
3	멕시코	28,395,866,654
4	독일	14,709,263,779

5	일본	12,997,039,459
6	대한민국	7,294,568,974
7	영국	7,102,990,236
8	이탈리아	6,946,896,038
9	프랑스	5,545,419,582
10	Other Asia, nes	4,537,842,707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국가명	금액(\$)
1	미국	229,809,613,384
2	중화인민공화국	56,534,303,397
3	멕시코	27,844,460,638
4	독일	14,771,589,529
5	일본	12,468,281,946
6	대한민국	7,276,829,530
7	이탈리아	7,137,707,120
8	영국	6,996,648,545
9	프랑스	6,560,437,952
10	베트남	5,264,510,802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상위 10개 수출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39,504,022,525
2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3,338,266,033
3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22,780,805,169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0,221,697,805
5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2,382,504,698

6	440710	침엽수류	7,524,807,215
7	271121	천연가스	6,535,837,217
8	300490	기타	5,014,419,557
9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4,259,874,932
10	271019	기타	4,089,097,53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54,040,475,090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8,103,557,635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2,656,941,165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6,213,853,669
5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3,110,877,116
6	271121	천연가스	7,949,853,299
7	271019	기타	6,239,871,691
8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546,628,963
9	270112	유연탄	5,202,908,010
10	12051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5,038,061,818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6,891,563,018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0,456,321,994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9,034,925,690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915,568,430
5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2,113,593,879
6	440719	기타	7,854,457,098
7	271019	기타	7,635,141,196

8	271121	천연가스	7,450,660,946
9	270112	유연탄	5,777,639,015
10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506,822,728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68,075,943,000
2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21,885,154,014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5,899,358,554
4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5,567,014,212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5,558,152,732
6	271019	기타	7,491,956,222
7	271121	천연가스	6,814,282,849
8	440719	기타	5,970,509,624
9	870322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5,943,907,375
10	270112	유연탄	5,295,487,255

<자료원 : UN Comtrade>

- 상위 10개 수입품목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717,652,763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872,332,854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9,937,538,804
4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996,920,125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175,808,077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7,499,297,634
7	300490	기타	5,864,825,702
8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568,418,315

9	870829	기타	5,516,972,634
10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4,632,618,903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3,780,852,209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168,207,989
3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0,981,938,202
4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0,772,741,952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483,172,891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8,283,607,676
7	300490	기타	5,697,678,500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543,336,567
9	870829	기타	5,448,096,994
10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434,383,859

<자료원 : UN Comtrade>

2018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4,945,980,057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14,391,363,612
3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11,137,539,547
4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0,233,023,769
5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760,367,805
6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8,870,618,946
7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127,465,165
8	300490	기타	5,984,419,113
9	271019	기타	5,695,378,865
10	870829	기타	5,352,425,882

<자료원 : UN Comtrade>

2019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cc를 초과 3,000cc 이하인 것	14,582,362,052
2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4,472,521,085
3	870431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10,157,362,492
4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492,886,760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9,110,970,649
6	271012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8,766,617,952
7	300490	기타	6,581,018,235
8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826,241,818
9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5,661,903,517
10	870829	기타	5,382,457,034

<자료원 : UN Comtrade>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6	4,885	3,943	942
2017	4,718	5,043	-325
2018	5,743	5,753	-10
2019	5,568	5,759	-191
2020	4,446	3,664	782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2,397	37	2,360
2	7414	전기자동차	185	0	185
3	7420	자동차부품	258	30	227
4	8121	무선전화기	443	1	442
5	6141	철강관	122	13	108
6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101	0	101
7	7211	섬유기계	57	0	56
8	8352	축전지	68	3	64
9	2140	합성수지	89	30	59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7	31	-2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	-------------	-----	------	------	------

1	7411	승용차	1,977	15	1,962
2	7414	전기자동차	312	0	312
3	7420	자동차부품	152	29	123
4	8121	무선전화기	151	0	151
5	6141	철강관	86	0	86
6	6111	철강및비합금강형강	72	0	72
7	7211	섬유기계	62	0	62
8	8352	축전지	62	0	62
9	2140	합성수지	58	19	39
10	2290	기타정밀화학제품	57	20	37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9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22	유연탄	0	1,672	-1,673
2	1130	동광	0	505	-505
3	1120	철광	0	338	-339
4	2511	펄프	0	260	-260
5	0221	가축육류	0	165	-165
6	2330	칼륨비료	0	150	-151
7	7472	항공기부품	6	212	-207
8	0131	식물성유지	0	112	-112
9	0242	꿀및로얄제리	3	81	-78
10	7461	선박	0	20	-20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20년 (10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1322	유연탄	0	989	-989
2	1130	동광	0	347	-347
3	1120	철광	0	263	-263
4	2511	펄프	0	151	-151

5	0221	가축육류	0	131	-131
6	2330	칼룸비료	0	114	-114
7	7472	항공기부품	3	97	-94
8	0131	식물성유지	1	84	-83
9	0242	꿀및로알제리	3	80	-77
10	7461	선박	0	68	-68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캐나다-미국 FTA(CUSFTA)	미국	1987-10-04	1989-01-01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으로 대체됨.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미국, 멕시코	2020-03-13	2020-07-01	* NAFTA(1992.12.17. 체결, 1994. 1. 1. 발효)를 대체하는 무역협정 * NAFTA와 비교해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역내 부가가치 비율, 원산지 기준, 노동가치 규정, 최저임금 규정 등임
캐나다-이스라엘 CIFTA(Canada-Israel Free Trade Agreement)	이스라엘	1996-07-31	1997-01-01	중동지역 국가와 처음으로 체결한 FTA
캐나다-칠레 FTA	칠레	1996-12-05	1997-07-05	남미국가와 체결한 첫 FTA
캐나다-코스타리카 CCRFTA(Canada-Costa Rica Free Trade Agreement)	코스타리카	2001-04-23	2002-11-01	
캐나다-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008-01-26	2009-07-01	협상 11년만에 발효되었으며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캐나다-페루 FTA	페루	2008-05-29	2009-08-01	2008년 캐나다가 서명한 두 번째 FTA
캐나다-콜롬비아 FTA	콜롬비아	2008-11-21	2011-08-15	2008년 캐나다가 서명한 세 번째 FTA
캐나다-요르단 FTA	요르단	2009-06-28	2012-10-01	캐나다와 첫 번째 FTA를 타결한 이슬람 국가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짐.
캐나다-파나마 FTA	파나마	2010-05-14	2013-04-01	
캐나다-온두라스 FTA	온두라스	2013-11-05	2014-10-01	
한국-캐나다 FTA	한국	2014-03-11	2015-01-01	캐나다의 아시아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FTA를 체결
캐나다-우크라이나 CUFTA(Canada-Ukraine Free Trade Agreement)	우크라이나	2016-07-11	2017-08-01	

캐나다-유럽연합(EU) FTA(CETA,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유럽연합(EU)	2016-11-30	2017-0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야 공식 발효되며, 비준이 완료된 국가는 캐나다를 포함해 총 15개국임. * 이탈리아,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CETA에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식 발효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한편, 2020년 1월 31일, 영국은 브렉시트(Brexit) 공식 승인으로 EU 회원국에서 제외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페루, 칠레	2018-03-08	2018-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SMCA(前 NAFTA), CETA(캐나다-유럽연합 협정)에 이어 캐나다의 세 번째 규모로 큰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 현재까지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베트남, 칠레 등 8개국이 비준을 완료함.

〈자료원 : 캐나다 외교부〉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캐나다-중남미 FTA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2001년 11월 21일부터 2010년까지 중남미 4개국과(The CA4, Central American Four countries) 12차례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캐나다와 온두라스는 2014년 별도의 양자간 FTA를 체결했고, 나머지 국가들과의 추가 협상은 잠정 중단됨.	The CA4 동맹국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이 포함
캐나다-싱가포르 FTA	싱가포르	2001년 10월, 1차 협상 이후 2007년까지 8차 협상까지 진행됨. 양국의 동의에 따라 2009년 11월부터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	
캐나다-카리브 공동체 FTA(CARICOM, Canada-Caribbean Community Free Trade Agreement)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몽세라트,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	2007년 7월 1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7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나 현재 잠정 중단된 상황이며, 현재 계획된 추가 협상 일정은 없음.	카리콤(CARICOM)은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몽세라트,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의 회원국을 포함한 카리브공동체

캐나다-도미니카공화국 FTA	도미니카공화국	2007년 6월 7일, 1차 협상을 개최했으며 양국 대표단이 2009년 12월에 마지막으로 협상을 진행한 이후 추가 협상은 개최되지 않고 있음.	
캐나다-일본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본	2012년 3월 25일, 첫 협상 개시 이후 2014년 11월 도쿄에서 7차 협상을 진행함. 지난 2019년 4월 아베 일본 전 총리는 오타와를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및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함. 캐나다와 일본은 이미 CPTPP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당분간 양자간 경제동반자협정(EPA)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캐나다-모로코 FTA	모로코	2011년 1월, 1차 협상을 개시했으며, 2013년 4차 협상 이후 잠정 중단됨.	캐나다는 아프리카 국가중 첫번째로 모로코와 FTA를 협상 중
캐나다-인도 FTA (CEPA, Canad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인도	2010년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10차 협상까지 완료되었으며, 향후 양국간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계획	
캐나다-메르코수루 FTA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018년 3월 9일 파라과이에서 첫 공식 협상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7차 협상까지 진행됨.	메르코수루(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의 회원국을 포함한 남미공동시장
캐나다-터키 FTA	터키	2010년 10월 예비협상(Exploratory Discussion) 추진에 합의하였고, 아직까지 공식적인 협상은 진행되지 않음. 2013년, 양국은 공동 경제 무역 위원회를 설립하여 향후 교역 증진에 합의함.	
캐나다-필리핀 FTA	필리핀	2015년 5월 양자 FTA 예비협상 추진에 합의하고, 2015년 7월 첫 예비 협상이 이루어짐. 현재 캐나다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과의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양자 FTA 협상은 보류할 것으로 전망됨.	
캐나다-중국 FTA	중국	2016년 9월 캐나다와 중국은 양자 FTA 타당성 연구 추진에 합의하였고, 2017년까지 세 차례의 회의가 진행됨. 타당성 연구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정식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p>캐나다-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FTA</p>	<p>아세안(ASEAN)</p>	<p>2017년 9월, 캐나다와 아세안(ASEAN)은 예비협상상 추진에 합의함. 2019년까지 총 두 차례의 회의가 진행됨. 향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아세안과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p>	<p>아세안(ASEAN)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회원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p>
<p>캐나다-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 FTA</p>	<p>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p>	<p>2017년 10월 22일, 1차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로 2018년까지 4차 협상이 진행됨.</p>	<p>태평양 동맹(Pacific Alliance)은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 통합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지역경제연합으로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4개국이 정회원국으로 참여함. 캐나다 외에도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등도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추진 중</p>

<자료원 : 캐나다 외교부(Global Affairs Canada)>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210.30, 7210.69, 7212.50, 7210.49, 7210.69, 7225.91, 7210.49, 7212.20	도금강판(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Sheet)	반덤핑(규제중)	2018-07-26
2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1.23, 7211.29, 7211.90, 7225.50	냉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in coils or cut lengths)	반덤핑(규제중)	2018-05-25
3	7209.15, 7209.16, 7209.17, 7209.18, 7209.25, 7209.26, 7209.27, 7209.28, 7209.90, 7211.23, 7211.29, 7211.90, 7225.50	냉연강재(Certain Cold-rolled steel in coils or cut lengths)	상계관세(규제중)	2018-05-25
4	7304.19, 7305.11, 7305.12, 7305.19, 7306.19	탄소합금강관(Certain Carbon and Alloy Steel Line Pipe)	반덤핑(규제중)	2017-06-08
5	7216.99, 7308.40, 8428.31, 7301.20, 7308.90, 7326.90, 8428.33, 8421.99, 8428.39, 7216.90, 8428.32, 8421.99	산업용 철 가공부품(Certain fabricated industrial steel components)	반덤핑(규제중)	2016-09-12
6	7304.29/39/59, 7306.29/30/50/90	유경용강관(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규제중)	2014-07-21
7	7213.10, 7214.20	콘크리트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s)	반덤핑(규제중)	2014-06-13
8	7208.51, 7208.52	후판(열연강판) (Certain hot-rolled carbon steel plate and high-strength low-alloy steel plate)	반덤핑(규제중)	2013-09-05
9	7411.10	동관(Copper Tube)	반덤핑(규제중)	2013-05-22
10	7306.30	용접탄소강관(Carbon Steel Welded Pipe)	반덤핑(규제중)	2012-05-14
11	8504.23/90	유입식변압기(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2012-04-23
12	7412.10/20	동제관연결구류(Certain Copper Pipe Fittings)	반덤핑(규제중)	2006-06-08

13	7306.30/ 50/ 61	구조용 강관(Steel Structure Tubing:hollow structural sections (HSS) made of carbon and alloy steel, welded)	반덤핑(규제중)	2003-05-22
----	-----------------	--	----------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1) 수입금지품목

캐나다의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열거된 위조화폐, 무기, 죄수가 제조한 제품, 판권이 캐나다 및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再版) 등의 품목은 수입이 금지되며, 캐나다가 가입한 국제협약에서 지정한 품목도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수출입 허가법에 명시된 군용품, 철강, 낙농제품 등은 캐나다로 수출 입시 허가(Export Permit, Import Permit)를 받아야 한다.

○ 동물

- 몽구스과(Mongoose, 포유류)에 속하는 동물들로 Galidia, Galidictis, Mungotictis, Salanoia, Suricata, Herpestes, Helogale, Donogale, Atilax, Mungos, Crossarchus, Liberiictis, Ichneumia, Bdeogale, Rhynchogale, Cynictis, Paracynictis, Cryptoprocta 등
- turnus vulgaris, Gracula religiosa, Leucopsar rothschildi를 제외한 찌르레기과(Starling Bird, 조류)에 속하는 동물들
- 양식용, 동물원 및 관람용 관상조를 제외한 비 사냥용(non-game) 조류
- 타조털, 뇌조(꿩)털, 인도공작털, 사냥용으로 분류된 살아있는 조류, 박물관 및 연구목적의 조류를 제외한 해오라기털(물수리 털), 새의 부리, 머리, 날개, 꼬리, 가죽 등 기타 조류의 일부분(가공 여부 불문)

○ 금속: 위조 지폐 및 동전

- 침구: HS Code 9805, 9806, 9807, 9808, 9810으로 구분되는 침대 매트리스나 중 살균 처리된 것을 제외한 모든 중고 매트리스

○ 인쇄물: 인쇄판권이 캐나다나 영국에 있는 책자의 재판

○ 기타

- 완제품이나 그 부속품을 죄수들이 만든 경우
- 캐나다 상표법(Trade-marks Act)을 위반하거나 캐나다에서 수입을 규제하는 지역 또는 국가에서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 연막: 자동차용이나 선박용의 연막(smoke screen)

○ 자동차: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차

- HS Code 9801.10.10, 9801.10.20, 9801.10.30, 9807, 9808, 9809, 9810으로 수입된 경우
- 관세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의해 압류된 경우
- 상속에 따라 반입된 경우
- NAFTA 조항에 의해 미국, 멕시코로부터 수입된 경우
-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출고된 후 10년 이하의 중고차
-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출고된 후 8년 이하의 중고차
-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출고된 후 6년 이하의 중고차
-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출고된 후 4년 이하의 중고차
-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출고된 후 2년 이하의 중고차
- 2019년 이후 출고된 중고차

- 비행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중고 비행기
 - HS Code 9803, 9809, 9810으로 구분되어 수입된 경우 중 민간 및 화물 수송만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 항공법이나 각 주의 법령에 따라 압류된 경우
 - 캐나다 국방부에서 국방의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 미국에서 수입되는 경우

- 성냥: 백색 인광성 성냥(White Phosphorus Matches)

- 무기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자동화기, 무기, 총탄, 무기 제조기 및 관련 기기
 - 관련 공무원이 직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국방부, 경찰, 관련 부처로부터 위임을 받아 개인이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무기 관련법의 예외조항에 속하는 비시민권자가 수입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취득해 수입하는 경우나 캐나다를 경유해 제3국으로 운반되는 경우
 - 캐나다 무기관련법의 35조에 의해 자동화기 수입할 수 있는 비시민권자나 허가권을 취득한 자가 수입하는 경우
 - 해외에서 자동화기를 구입한 캐나다 시민으로서 무기 취급 허가를 취득한 경우

- 출판물

- 그림, 사진, 책, 프린트물 등의 각종 인쇄물 중 Criminal Code에 의거, 인종차별 및 각종 증오, 범죄, 반역, 학대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경우
- 범죄나 폭력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포스터나 전단지
- 아동 포르노를 주제로 한 사진, 필름, 비디오, CD, DVD 등 모든 관련 영상물

2)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 수입쿼터: 자국의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칠면조, 닭고기, 달걀 및 유제품,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품목에 수입쿼터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산업에 해당하는 품목에 한해서는 수입쿼터를 적용하지 않는다.

- 수입규제: 2020년 하반기 기준, 캐나다는 총 32개국 43개 수입품목에 대해 135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규제품목 기준 철강/금속(116건), 기타(13건), 기계(4건), 전기전자(2건) 순으로 기타 분류 품목은 식품, 건축재료 등이다. 규제형태 별로는 반덤핑(101건), 상계관세(32건), 세이프가드(2건) 등이 적용 중이며, 주요 규제 대상국가는 중국(47건), 한국(13건), 터키(9건), 베트남(8건), 인도(5건) 등이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수입관리 리스트(Import Control List)를 운영하는데 해당 리스트에 속하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별도의 수입허가(Import Permit)* 취득이 필요하다.

- * Import Permit: 군용품, 철강, 의류제품, 무기류, 낙농제품 및 기타(이스라엘산 장미,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북아일랜드산 돼지고기)

- 세이프가드: 2019년 5월 1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8년 10월 25일부로 발동한 수입산 철강재 7개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품목 중 중강판 및 스테인리스강선에 대해서만 향후 3년간 세이프가드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2019.5.13 정식 발효). 이번 세이프가드는 저율관세할당(Tariff-rate Quotas; TRQ) 방식이 적용되며, 기존에 설정된 할당량(쿼터) 이상으로 수입될 경우 고율의 관세(1년 차 중강판 20%, 스테인리스 강선 25%)가 부과된다. 세이프가드 적용국가 중 이미 해당 품목에 반덤핑 관세율이 부과되고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 관세율과 합산하여 적용된다. 참고로,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완전히 발효된 국가들은 세이프가드 대상국에서 제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7개군 모두에 대해 '피해 없음' 판정을 받았다.

- * 중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강관, 열연강판, 프리페인트 철강, 스테인리스 강선, 선재

3)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

- 2020년 11월 20일 기준, 캐나다의 대 한국 수입규제는 총 13건으로 반덤핑 12건, 상계관세 1건으로 확인된다.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건, 전기전자 1건으로, 냉연강판의 경우 반덤핑, 상계관세 모두 적용 중이다.
- 2020년 5월 29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대만, 독일, 말레이시아, 터키, 한국산 등의 후판(Heavy Plate)에 대해 신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고, 2020년 10월 9일 CBSA 예비판정 결과 한국산 후판은 반덤핑 혐의가 없음으로 피제소국에서 제외되었다.
- 2020년 5월 22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콘크리트 철근 반덤핑 일몰재심에 대해 긍정 판정을 내렸고, 2020년 10월 14일 캐나다 무역재판소(CITT)가 반덤핑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5년간 규제를 지속할 계획이다.
- 2020년 3월 13일, 캐나다 무역재판소는 한국산 후판(열연강판, Hot-Rolled Steel Plate) 일몰재심 결과 반덤핑 혐의 유효 판정을 발표하였고, 향후 5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 2020년 2월 24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한국산 유정용강관2 일몰재심에 착수하였고, 8월 7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캐나다 무역재판소의 발표예정일은 미정이다.

4) 수입규제 전망

- 캐나다는 철강에 대한 높은 수요에 따라 수입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정부의 철강산업 보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캐나다 철강기업들은 “규제 적용 중인 철강재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수입가격이 자국 정상가격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입장으로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일부 현지 전문가들은 세이프가드 등 일부 수입 규제가 장기화할 경우 캐나다 내 철강제품 공급 부족 가능성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 한국 최대의 수출품인 자동차의 경우 캐나다와의 교역품목에서 가장 큰 무역수지 불균형을 보이는 제품이지만 현재 자동차 산업의 치열한 가격 및 원가 절감 경쟁으로 덤핑 수출 혐의를 받기 어려워 수입규제 가능성은 매우 낮다.
- 한편, 캐나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확정 후 한국산 제품에도 추가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당국은 한국과 중국의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철강재 품목의 수입규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입규제가 진행 중인 중국의 철강재 품목은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캐나다와의 심각한 무역 불균형으로 규제 강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수출입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대다수 제품은 소비자 및 기업 판매를 위해서 반드시 캐나다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따라서 수입금지 또는 수입허가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인증을 받지 않으면 캐나다 바이어가 구매를 꺼리므로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 기업이 바이어와 접촉 후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인증 관련 문제이다. 특히, 캐나다는 선진국으로서 기계, 전자 등의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부품, 소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라는 인증을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CSA 취득 여부가 수출 계약 성사에 필수적인 경우가 많다. CSA 외에도 미국 UL, ETL 등의 인증이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업 및 상품에서 CSA가 가장 일반적인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받는 UL, ETL 인증과 같이 CSA 인증은 민간기관에서 발행하는 민간자율인증에 속한다.

그러나 가스연소기구, 전자기기 등 사고 위험이 큰 제품은 캐나다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CSA 인증을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CSA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임에도 CSA가 규정하는 제품 규격 및 요구사항 등이 법적 강제성을 띄게 되어 강제인증이 된다.

현재 CSA 인증 중 약 40%가 연방정부 및 각 주 정부 법률에서 채택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품군에 속한 제품은 캐나다 국내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CSA 인증 취득이 필요하다. CSA는 캐나다 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발급할 수 있으며, 9가지 대분류에 속한 1,800여 개 제품에 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 예비신청: 예비신청은 정식 인증취득 신청 전, CSA 인증획득에 필요한 신청서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제품 종류에 따라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예비신청 의뢰 서신 : 신청회사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있는 영문 편지용지를 사용, CSA 인증 신청을 알리고 신청서 송부를 요청하는 서한

- 제품 사양서 : 제품의 품명, 모델 번호, 전기정격, 용도, 성능, 작동법 등을 엔지니어가 알기 쉽게 설명한 서류
- 부품 목록표 : 제품에 사용된 부품 목록을 작성하고 부품 제조업자로부터 제출된 제작 도면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품이 이미 CSA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증 취득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품도 별도의 안전시험을 거쳐야 한다.

- 제품의 내부, 외부 사진, 구조도, 배선도(전기·전자제품), 제품의 최종 조립 공장명, 담당자 및 주소

○ CSA 신청서 송부

- CSA는 예비신청 의뢰서신과 첨부 자료를 접수, 검토 작업을 개시한다.
- CSA는 검토작업 개시 후 5일 이내로 본 신청서를 작성, 인증비용의 견적금액, 시험 샘플의 종류 및 수량, 담당자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

- 신청자는 CSA가 송부한 본 신청서를 수령한 후 서명한 후, 시험비용과 샘플을 제출한다.
- 샘플이 대형규격이거나 우편 제출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방문시험도 가능하다.
- 본 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시험시행

- 본 신청수속 완료 후 시험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 담당기사가 결정되고 작업 일정이 예정되며 CSA의 고유번호가 부여된다.
- CSA의 담당기사는 작업일정에 따라 인증취득을 신청한 제품이 구조 및 성능 면에서 캐나다의 규격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평가서(Finding Letter) 송부

- 시험검사 후 CSA는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CSA의 평가서는 시험 결과, CSA 라벨과 마크 표기법, 제품변형 요구사항(alteration)을 포함한다.
- 제품변형 요구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는 개선방법을 CSA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 승인심의 및 인증결과 통보

- CSA는 정식 승인을 위해 승인심의회(CSA Approval Council)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 승인심의회의 정식승인을 거쳐, CSA는 결과를 인증서와 함께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CSA는 인증기록을 작성,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공개한다.

○ 협약서 체결(Legal Agreement)

- 신청자는 인증서를 받은 후 CSA 마크 사용 관련 지침을 담은 협약서를 CSA와 체결한다.
- 동 협약서는 CSA 검사자의 공장방문 허가,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변형이 필요한 경우 CSA에 통지할 의무, 인증유지를 위한 연간 경비지급 내역을 포함한다.

- 공장검사(CSA Field Service)
 - 제품의 인증취득 승인 이후 사후관리 차원에서 공장검사를 한다. CSA 검사원이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업무 제휴기관의 검사원이 대신 방문하여 수행한다. (한국은 산업기술시험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 전화: 02-860-1114
 - 웹사이트: www.ktl.re.kr
 - 공장검사는 연간 6회를 한도로 사전 예고 없이 공장을 방문하여 시행하며, 제품의 인증 요구사항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한다.
 - 정기 공장검사 외에 문서로 공장방문을 요청해 시행하는 검사도 있다.
 - 검사횟수는 통상 연간 2~4회로 1회 검사 시 보통 이틀이 소요된다.

- CSA 공장검사 보고서
 - 공장검사 후, 검사원은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장 담당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 검사결과 지적사항(개선사항)에 대해 공장 측에서 동의하면 보고서에 상호 서명한다.
 - 보고서 사본 1부는 공장에서 기록용으로 보관한다.
 -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CSA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가 누적되거나 검사 결과가 CSA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인증취득 비용
 - 인증취득에 드는 비용은 제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다. CSA 측은 직접 인증의 취득을 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분야별 인증 취득 비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샘플 운송료, 통신료 등 각종 간접경비로 소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 복잡한 구조를 갖춘 제품의 인증취득을 신청할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업무 진행상 CSA 엔지니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캐나다로 직원을 파견할 때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인증취득 기간
 - 예비 신청일로부터 최종 인증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6주에서 8주로 이는 인증취득 절차가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한하며, 불합격해 재시험을 행할 때에는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 CSA 라벨 발주
 - CSA 라벨 발주를 위해 신청자는 CSA 파일 번호, 라벨 종류와 수량을 신청한다.
 - CSA는 업무 제휴기관(한국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 라벨을 송부한다.
 - 업무 제휴기관이 라벨을 보관하고 있다가 공장을 방문, 해당 제품이 관련 규격 및 CSA의 인증보고서와 일치하게 생산되는지를 확인 후 라벨을 송부한다.

- 미이행 시 제재사항 및 우리나라 기업 유의사항
 - 전기로 작동하는 조명제품을 취급하는 한국기업 A사는 캐나다 바이어들이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CSA 또는 UL과 같은 인증을 취득하지 않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바이어가 아무리 흥미를 보이는 제품이라도, 캐나다 정부의 지정으로 CSA 인증취득이 강제되는 제품의 경우 수출 계약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한, 뒤늦게 인증취득을 신청하여, 절차상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청부터 인증취득까지의 소요기간이 6주에서 보통 8주까지 소요되고, 재시험이 필요할 경우 수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인증취득이 강제되는 경우 인증을 미리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하다.

TBT

캐나다는 비관세장벽 유형별로는 위생검역조치(1,341건), 무역기술장벽(748건), 반덤핑(101건), 상계관세(32건) 순으로 무역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5월 13일부터는 내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중강판, 스테인리스 강선에 셰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식품의약품 규정 개정, 에너지효율 규정 개정, 납 함유 소비재 규제 등이 대표적이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래 링크에

서 확인 가능하다.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http://www.tradenavi.or.kr>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개괄

캐나다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명시된 관세부와 규칙에 기초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와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2) 관세율 종류

○ 관세 코드 종류

① 한국 특혜관세(Korean Tariff; KRT)

- 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한-캐 FTA 양허안에 다른 별도의 관세(KRT)가 부과된다.
- 한-캐 FTA에 따른 관세 양허안은 한국 관세청에서 한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4&cntntslid=2430

② 최혜국관세(Most Favored Nation Tariff; MFN)

- 캐나다와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③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물, 공산품, 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 2020년 기준, 캐나다는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을 106개로 지정하고 있다.

④ 최저개발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

· 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US\$ 900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 마다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 아프리카, 아시아 및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 2020년 기준, 캐나다는 최저개발국관세 대상국을 49개로 지정하고 있다.

⑤ 일반관세(General Tariff; GT)

· 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세율법 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된다.

- 일반관세에 속한 수입품은 MFN, GPT 등의 다른 관세 기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 미국, 멕시코 관세(UST, MT, MUST):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⑥ 미국, 멕시코 관세(UST, MT, MUST)

-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⑦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AUT, NZT, CT, CIAT)

· 호주 및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결된 통상협정을 기반으로 최혜국 관세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⑧ 카리브해 영연방국가(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CCCT)

·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⑨ 유럽연합 관세(Canada-European Union Tariff; CEUT)

· 2017년 9월 21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간 FTA인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CEUT 관세가 적용된다.

⑩ 콜롬비아 관세(COLT)

· 캐나다-콜롬비아 FTA가 발효됨(2011.8.15.)에 따라 콜롬비아산 상품에는 CCOFTA 양허안에 따른 별도의 관세(COLT)가 부과된다.

⑪ 코스타리카 관세(CRT)

· 코스타리카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캐나다-코스타리카 FTA인 CCRFTA 협정 기준이 적용된다.

⑫ 온두라스 관세(HNT)

· 온두라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캐나다-온두라스 FTA(2014.10.1. 발효)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관세(IT, NT, SLT)

· 캐나다-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간 FTA가 2009년 7월 발효되면서,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된다.

⑭ 요르단 관세(JT)

· 캐나다-요르단 FTA가 2012년 10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품에는 JT 관세가 부과된다.

⑮ 파나마 관세(PAT)

· 2013년 4월 1일 캐나다-파나마 FTA 협정기준에 따라 파나마산 상품에는 별도의 관세(PAT)가 부과된다.

⑯ 페루 관세(PT)

· 캐나다-페루 FTA 발효로 2009년 8월 1일부터 페루산 제품에는 PT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⑰ 우크라이나 관세(UAT)

· 2017년 8월 1일 캐나다-우크라이나 FTA인 CUFTA가 발효되면서 우크라이나산 상품에는 UAT 특혜관세가 부과된다.

3) 관세평가제도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1985년 1월 1일을 기해 GATT 7조의 관세평가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동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기준을 종전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대체해 관세평가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는 항상 캐나다 달러로 표시하며 캐나다 세관의 관세 평가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나 연방법원에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는 수입제품의 통관 시 Import Duty(관세) 외에 Excise Tax(가솔린, 보석, 시계, 자동차 등에 부과되며 우리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및 Excise Duty(담배 및 술 등에 부과)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데 이때의 부과액은 상기 관세 평가액에 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품용역세

(Goods and Services Tax; GST)도 부과하는데 연방 상품용역세는 평가액과 상기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 부과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관세율 조회를 위한 캐나다 기준 HS Code 확인 및 예시

캐나다는 10자리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첫 6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같다. 끝의 4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기준 HS Code를 파악한 후 첫 6자리 숫자를 이용해 정확한 캐나다 기준 HS Code를 찾아야 관세율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 기준 HS Code는 코트라(KOTRA) 또는 관세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캐나다 기준 HS Code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HS Code 조회가 가능한 한국과 캐나다 기관

- KOTRA: www.kotra.or.kr/kh/common/getHSCodeList.do
- 한국 관세청: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캐나다 국경관리청: 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20/menu-eng.html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개요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는다. 이는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 안전문제와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업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물품검사를 면제한다.

초기 수출되는 제품이나 농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수출입허가법, 수입규제 조치법 등에 적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불규칙 선택 검사(Random Sampling)를 통해 수입 서류와 제품의 부합 여부, 제품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 수입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서류상의 오류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들어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한국산 배, 감 등의 과실류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으며, 주로 어류(젓갈 등) 및 액젓에 대한 수입 불허가 늘어나는 추세다.

2) 수입규제품목

일반 상품과 달리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과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서 명시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은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 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에서 '수입규제품목(Import Control List)'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 Import Control List: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604/page-1.html#h-558579

3) 통관의 종류

○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RMD)

- 최소의 서류로 진행되는 약식 통관절차를 완료해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제도이다.
- 현재까지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향후 문제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업체에서 물품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전년도 월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며, 최소금액은 US\$ 250, 최고금액은 US\$ 2만 5,000으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Cargo Control Document 1부, Invoice 2부,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필요 시) 1부

○ 일반서류통관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RFD)

- 일반적인 정식 통관절차로서 관세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앞서 소개된 최소서류통관제도와 달리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Cargo Control Document 2, Invoice 2, Canada Customs Coding Form 2,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1부, Certificate of Origin 1부(필요시)
- * CBSA 홈페이지에 통관과 관련된 'Release of Your Shipment' 페이지 참조(<http://www.cbsa-asfc.gc.ca/import/release-dedouanement-eng.html>)

○ 우편통관

- 우편으로 C\$ 20 이상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Form E14(CBSA Postal

Import Form)를 우편물에 부착해 배달해야 한다.

- 수취인이 수령과 동시에 관세 및 세금(HST 또는 GST와 PST)을 납부해야 하며, 캐나다 우체국에서 부과하는 C\$ 9.95의 취급비용(Handling fee)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우편통관의 경우 국경관리청(CBSA)에서 우편물에 Form E14를 부착한 후 캐나다 우체국이 수취인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수취인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국경관리청 홈페이지에 우편통관과 관련된 'Importing by Mail' 페이지 참조(www.cbsa-asfc.gc.ca/import/postal-postale/menu-eng.html)

- 우편으로 C\$ 20 미만의 가치를 지닌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소비세, 취급비용(Handling Cost)이 부과되지 않는다.

○ 통관본드(Custom Bond)

- 수입자가 관세 및 세금 등 각종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세관에 제공하는 담보 역할을 하며 주로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 이용된다.

- 통관본드를 예치에는 현금, 수표, 캐나다 연방정부 국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통관본드 양식(D120)도 이용이 가능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일반적으로 선택적 샘플 조사를 통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물품검사 빈도와 강도는 과거 검사기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는 신고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고 내용과 실제 통관물품이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 통관법(Canada Customs Act)은 국경관리청(CBSA)의 권한이 수입금지품목 외의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의해 국경관리청 재량에 따라 수입 물품을 검사, 보류, 압류, 폐기,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동식물, 동식물 가공품, 사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고유의 검역권한을 갖는다. 2003년 이후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의 동식물 식품 관련 제품 검역의 실무적인 역할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서 위임받아 일반 상품 검역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식품검역청의 검역 요건은 품목마다 상이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식품검역청은 웹페이지에서 AIRS(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를 통해 HS Code에 따른 통관 요건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식품검역청의 검역이 필요한 식용 제품 수입의 검역 요건, 통관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해볼 수 있는 National Import Service Center(NISC)를 운영하고 있다.

- AIRS: 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 NISC: 1-800-835-4486(전화), 1-613-773-9999(팩스)

2) 방치된 화물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통보 이후 수취인은 40일 내 관세 및 소비세 등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보관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경관리청(CBSA)에 수령 의사를 신고하고 세관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보관료 부담을 덜 수 있다. 40일이 지나서도 수취인이 세관에 보관 중인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경관리청(CBSA)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이후 30일이 지나서도 수령하지 않은 물품은 국경관리청(CBSA)의 판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3) 세관의 조사항목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관에서는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을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세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가능하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 서류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깨끗한 통관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한-캐나다 FTA 한국 특혜관세(KRT) 혜택을 받기 위해선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을 첨부해야 하며 양식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bsf760-eng.html>
- 상업송장(또는 Canada Custom Invoice)과 수입 물품의 비교
 - 상업송장에 기입된 내용과 실제 수입물품이 동일한지 검사하는 과정으로 상품의 화폐가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정보, 최종 도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 기타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일반적인 조사 외에도 동식물의 경우 위생기준, 검역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동식물 관련 검역 권한은 캐나다 식품검역청이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이를 위임해 수행하고 있다.
 - 품목별로 조사 대상 및 방법이 상이하며, 품목별 요구사항은 아래 식품검역청 AIRS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 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4) 통관경비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 시 발생하는 통관경비는 상품에 따라 비용이 달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전에 예상 경비를 파악해야 한다. 관세는 제품 가치에 부과되며 관세가 부과된 뒤에 판매세(GST 5%)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100 가치의 A제품을 캐나다로 수입할 때의 관세가 10%인 경우, 관세는 C\$10(C\$100*10%)이며, 판매세(GST)는 C\$5.50(C\$100과 C\$10를 합산한 금액의 5%)이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 CJ Logistics

주소	7350 Wilson Avenue, Unit 120/130, Delta, British Columbia V4G 1H3
전화번호	+1-777-800-0949
홈페이지	https://www.cjlogistics.com/en/main
비고	한국 기업

○ Hyundai Shipping

주소	#119-1551 Broadway St. Port Coquitlam, British Columbia V3C 6N9
전화번호	+1-604-475-1111
홈페이지	https://www.cyhds.com/
비고	한국 기업

◦ Total Express

주소	3220 Caravelle Drive, Mississauga, Ontario L4V 1K9
전화번호	+1-905-362-8877
이메일	total.hq@totalexpress.ca
홈페이지	http://www.totalexpress.ca/
비고	한국 기업

◦ 3Way Interntional Logistics

주소	1515 Britannia Road East, Suite 311, Mississauga, Ontario L4W 4K1
전화번호	+1-905-565-1920
이메일	3way@ship3way.com
홈페이지	http://www.ship3way.com/

◦ Active Group

주소	#600-645 King Street West, Toronto, Ontario M4V 1M5
전화번호	+1-416-504-6227
이메일	richard@activegroup.com
홈페이지	http://www.activegroup.com/

◦ A&A Contract Customs Brokers

주소	#101, 120-176th Street, Surrey, British Columbia V3Z 9S2
전화번호	+1-604-538-1042
이메일	info@aacb.com
홈페이지	https://www.aacb.com/

◦ Centurion Trucking

주소	13042 84 Ave #202, Surrey, British Columbia V3W 1L2
전화번호	+1-888-325-1486
이메일	info@centuriontrucking.com
홈페이지	http://www.centuriontrucking.com/

◦ Cole International

주소	5955 Airport Road, Suite 223, Mississauga, Ontario L4V 1R9
전화번호	+1-905-672-6255
이메일	info@cole.ca
홈페이지	https://www.coleintl.com/

◦ Custom Delivery Solutions

주소	5700 44 St SE, Calgary, Alberta T2C 5G7
전화번호	+1-888-291-7191
이메일	enquiries@customdelivery.net
홈페이지	https://customhomedelivery.com

◦ DB Schenker of Canada

주소	5935 Airport Road, 10th Floor, Mississauga, Ontario L4V 1W5
전화번호	+1-905-676-0676
이메일	sales.canada@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s://www.dbschenker.com/global

◦ Fort McKay Logistics

주소	6468 Roper Rd NW, Edmonton, Alberta T6B 3P9
전화번호	+1-780-485-5666
이메일	fmlcustomerservice@fortmckaygroup.com
홈페이지	http://fortmckaylogistics.com

◦ Hitek Logistic

주소	9475 Rte Transcanadienne Ouest, Ville St-Laurent, Quebec H4S 1V3
전화번호	+1-514-631-5115
이메일	cs@hitek.com
홈페이지	http://www.hitek.com/

○ Kuehne & Nagel International

주소	2300 Hogan Drive, Mississauga, Ontario L5N 0C8
전화번호	+1-905-567-4168
이메일	info.toronto@kuehne-nagle.com
홈페이지	https://ca.kuehne-nagel.com/

○ Livingston International

주소	#720-1140 West Pender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V63 2R9
전화번호	+1-604-685-3555
이메일	helpdesk@livingstonintl.com
홈페이지	https://www.livingstonintl.com/

○ Pacific Customs Brokers

주소	101-17637 1 Avenue, Surrey, British Columbia V3Z 9S1
전화번호	+1-604-538-1566
이메일	info@pcb.ca
홈페이지	https://www.pcb.ca/

○ Pinetree Capital

주소	1965 Queen Street East, Suite 200, Toronto, Ontario M4L 1H9
전화번호	+1-416-941-9600
이메일	info@pinetreecapital.com
홈페이지	http://www.pinetreecapital.com/

○ Pantos Canada

주소	7810 Keele St. Unit C, Vaughan, ON, L4K 0B7
전화번호	+1-905-761-1500
이메일	ca_sales@pantos.ca
홈페이지	http://www.pantos.ca

III.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1) 개요

캐나다는 1985년 기존의 외국인 투자심의법(Foreign Investment Review Act)을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으로 대체해 투자 규제 정책을 대폭 완화했다. 외국인의 소규모 캐나다 기업 인수를 위한 투자나 새로운 기업 설립은 캐나다 정부에 신고(Notification)하면 되고, 투자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의 사전 검토(Net Benefit Review)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 투자법은 외국인들의 투자에 관한 기본 법규로 작용하며,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감세, 보조금 지급, 입지 특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로는 제조업, 농산품, 화학산업 등이 있다. 반면 자국 산업 보호 등의 이유로 특정 분야에 한해 투자를 규제하는 특별법이 존재하는데, 해당 규제 분야로는 통신, 방송, 문화 산업, 금융 서비스업 등이 있다.

2) 캐나다 기업 인수합병 규모에 따른 사전 검토

캐나다 투자법에 따라 캐나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사전 검토(Net Benefit Review)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소속된 국가가 WTO에 가입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투자 제한 금액이 달라지는데, WTO 비회원국 소속 외국인 투자자의 제한 금액은 C\$ 5,000만(약 451억 원)으로 1985년 캐나다 투자법 제정 이후 줄곧 유지되고 있다. 반면 WTO 회원국 소속 외국인 투자자에 적용되는 투자 제한 금액은 2020년 C\$10억 7,500만으로 2019년(C\$10억 4,500만) 대비 증액되었으며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2020년 WTO 회원국의 캐나다 공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금액은 C\$ 4억 2,800만이며, 피인수 기업의 가치 산정 기준을 자산가치(Asset Value)에서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로 변경해 더 정확한 가치 산정 기준을 도입했다.

3) 국가안보 사전심사

캐나다 정부는 사전 검토 외에도 추가로 국가안보 사전심사(National Security Review)를 시행할 수 있는데, 이는 캐나다 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이 잠재적으로 캐나다의 국가 안전에 대한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기 위한 제도이다. 통상 검토기간은 45일(영업일 기준)로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 시 최대 45일까지 추가로 연장될 수 있다. 현재 캐나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전 검토는 아직까지 그 절차 및 과정에 대해 세부적으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다. 이러한 비공개 행정 절차로 인해 사전 검토 단계에서 투자 승인을 받지 못한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계에서도 ‘밀실 행정’이라는 비판 여론이 존재한다.

투자인센티브

1) 정부의 투자정책

캐나다는 1985년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 제정 이후 “사업 투자에 개방적인 국가”가 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1994년부터는 NAFTA 체결로 역내 국가 간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됐다. 외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효율적인 사업운동을 도모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제조분야의 투자와 연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세 제도에 포함
- 연구개발, 기술이전, 인력자원개발,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기업 지원
- 기업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 지원
- 벤처기업의 기술 개발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본 제공
- 해외투자자나 국내 거주를 원하는 투자자에게 더 간편한 입국 절차를 적용

2) 정부의 외국기업에 대한 열의 및 지원

캐나다 정부의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열의와 지원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잘 나타난다. 한동안 약세를 보이던 캐나다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2019년에는 전년대비 19.3% 증가한 C\$672억을 기록하였고, 이는 과거 자원 중심의 투자에서 첨단기술 및 제조업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추진하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인공지능 분야로 C\$ 1억(약 856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2017년, 인공지능 전략(Pan-Canadian Artificial Intelligence Strategy) 실행에 착수한 바 있다. 동 인공지능 전략은 대학교, 연구소, 기업체 간 연구개발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여 캐나다가 디지털 정보 처리 부문에서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Oracle, HP, SAP 등을 비롯한 국제적인 기업들의 연구센터 및 허브 시스템이 퀘벡과 온타리오 주에 소재하고 있다. IBM의 캐나다 R&D 센터는 전 세계에 분포하는 IBM의 R&D 센터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구글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가장 큰 허브센터를 캐나다 워털루에 두고 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18년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3) 캐나다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개괄

캐나다에 기업을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내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 기업을 위한 우대정책은 없다. 그러나 G7 선진국으로서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갖춘 강점이 있으며,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감세 정책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조세 인센티브 ① 정부의 감세 정책

- 캐나다 정부는 기업에게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본 이득에 대한 특별 혜택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외국인의 투자를 지원한다.
- 2009년 19%였던 연방 법인세율은 매년 감소해 2012년에 15%까지 낮춰져 2020년까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우, 9%의 연방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 조세 인센티브 ② SR&ED Tax Benefits

-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Tax Benefits는 캐나다 내에서 시행되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세금 지원책으로, 연방 정부의 여러 인센티브 중 유일하게 외국기업에 국내 상장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 R&D 사업 지원 ① Strategic Innovation Fund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7년 기존의 항공우주 이니셔티브(Strategic Aerospace and Defence Initiative, SADI), 자동차산업 혁신기금(Automotive Innovation Fund, AIF) 등을 통합해 전략적혁신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을 새로 조성했다.
- 정부는 2017년부터 항공우주, 정보통신, 자동차 산업 등 관련 연구개발에 대해 C\$ 17억(약 1조 5,336억 원)을 교부하고 있으며, 총 54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로 동 지원금액은 2021년까지 지원 예정금액이다.

○ R&D 사업 지원 ② Impact Canada Fund

- 2017~2018년 연방 예산안은 혁신 기술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핵심기조로, 정부의 캐나다영향기금(Impact Canada Fund) 조성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2019년 6월, 연방정부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4지역을 지정하여, 총 C\$ 7,500만(약 677억 원)을 교부 계획을 발표하였다. 퀘벡 주의 몬트리올(C\$ 5,000만, 약 451억 원), 온타리오 주의 구엘프(C\$ 1,000만, 약 90억 원), 누나벗 준주의 누나벗(C\$ 1,000만, 약 90억 원), 노바스코시아 준주의 브릿지워터(C\$ 500만, 약 45억 원) 등의 지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 R&D 사업 지원 ③ Consortium for Aerospace Research and Innovation in Canada(CARIC)

- 2014년 발족된 CARIC은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로부터 C\$ 3,000만(약 271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 비영리 조직으로, 중점사업은 항공 산업 혁신 기술을 이끄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이다.

- 또한, 항공우주 업체와 연구기관, 교육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와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재정적인 지원 및 빠르고 적절한 R&D 촉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 연구분야는 소음 제거, 보안, 합성물, 항공 운항 관리, 자동 운항 시스템, 실내 디자인, 공급체인 최적화, 항공 전자 장치 및 제어 장치, 제조 및 조립 공정, 품질 보증 등이다.

제한 및 금지(업종)

문화산업을 제외하고는 신규투자자에 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은 없으나, 업종별로 규제가 제정돼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외국인이 출자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분적인 투자제한이 존재한다.

1) 투자 진출 제한 업종

○ 서적 출판, 배포 및 판매

- 캐나다 문화 정책하에 국익(Net Benefit)창출이 가능한 경우만 허용한다.

- 직·간접 투자를 통한 경영권 취득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지만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재투자한다는 조건하에는 허용한다.

○ 영상물 제작, 배급 및 판매

- 캐나다 기존 업체의 인수는 불허하지만 지적재산권 보유상품의 수입 및 배포는 신규투자자에 한해 허용한다.

- 새로운 영화 배급사 설립 시, 국제적 규모의 배급력을 갖춘 수입업자 또는 주요 투자자(Major investor)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 간행물 출판, 배포 및 판매

- 모든 간행물에 대한 투자는 캐나다 전통문화부(Canadian Heritage)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 회사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 외국 간행물의 광고 공간은 최대 18%로 제한한다.

○ 방송

- 캐나다방송통신위원회(CRTC;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정책에 따라, 캐나다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 기업은 시장에서 규제받는다.

- 주주 혹은 이사회를 통해 최소 80% 이상이 내국인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면 사업 승인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다.

2) 외국인의 출자비율 규제

○ 통신업

- 직접투자를 통한 통신사업 운영자 및 관리자(Type I carriers) 소유는 최대 20%까지로 제한한다.

- 자회사를 통한 인수 시, 자회사 주식의 67%는 내국인 소유로 제한한다.

○ 기타 산업

- 항공사 소유지분은 25%로 제한한다.

- 우라늄 채광기업의 최대지분소유 불가능하다.

- 인허가 기업의 경우, 외국인 출자비율을 49%로 지분을 제한한다.

- 캐나다에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아 정부는 언제든지 보상을 통해 개인의 토지를 환수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부 지역(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서스캐처원, 노바스코샤 주)에선 해당 지역 주민에게만 부동산 판매를 허용한다.
- 주·연방 정부의 감독하에 상황에 따라 규제 여부가 정해진다.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캐나다의 산업단지는 특정 산업별로 조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 주 정부, 시 정부가 관리하는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시 정부에서 관리하는 시 공단지역(Industrial Zone)과 개인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 공단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민간 공단이다.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 연방정부는 개입하지 않으며 공단지역이 소재해 있는 시 정부의 경제개발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시 공단지역이 가장 잘 발달하여 있으며 외국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만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단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외국기업이 특정도시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에 입주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이를 위한 별도의 금융지원 등의 특혜는 없다.

특히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ACOA(대서양), FORDQ(퀘벡 주), FEDNOR(온타리오 주 북부), WEDC(서부) 등의 4개 산하기관을 두고 동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주 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산업지원제도로는 온타리오 해부 시장 개척 기금(TEF), 기업혁신 및 생산성제고 지원제도(OIPS), 퀘벡 수출진흥프로그램(APEX)과 산업 개발지원제도(CQIDP) 등이 있다.

산업단지

◦ Point Trotter Industrial Park

규모	24만 2,811㎡
위치	Calgary, Alberta
임차료	◦ 1m2 당 C\$ 173 부터 시작하며 대규모 면적 계약 시 할인가 적용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Real Estate Development Services team, City of Calgary ◦ 담당자 : Mr. Alex Wihak ◦ 전화 : +1-403-268-8718 ◦ 이메일 : alexander.wihak@calgary.ca ◦ 홈페이지 : https://www.calgary.ca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여 상품, 서비스 효율적 운송이 가능하며, Canadian Pacific Railway 복합 운송 시설 및 기타 주요 교통루트에 인접. ◦ 캘거리 시가 운영하는 지속가능 리베이트 프로그램 적용으로 LEED 인증 시 최대 C\$ 10만 리베이트 제공

◦ Campbell Heights Business Park

규모	99만 9,573㎡
----	------------

위치	Surrey, British Columbia
임차료	○ C\$ 32/m2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ity of Surrey ○ 전화 : +1-604-591-4128 ○ 이메일 : econdev@surrey.ca ○ 홈페이지 : https://www.surrey.ca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에 파나마스급 선박 수용이 가능한 Fraser Surrey Docks가 위치해 있으며 15번 고속도로(Pacific Highway)를 통해 Pacific Border 미국 국경까지 5분 소요. ○ 99번 하이웨이를 통해 밴쿠버 국제공항 및 다운타운과 직통 연결

○ Cambridge Business Park

규모	44만 5,154 m ²
위치	Cambridge, Ontario
임차료	○ C\$ 52/m2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Economic Development Division, City of Cambridge ○ 담당자: Ms. Leah Bozic ○ 전화: +1-519-740-4685 ○ 이메일 : questions@cambridge.ca ○ 홈페이지 : www.cambridge.ca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자동차부품, 자동차조립, 기계, 금속가공, 항공부품업이 발달함. ○ 2018년 공단 확장 계획을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밝혀지지 않음.

○ Hamilton Business Parks

규모	총 3,297만 m ²
위치	Hamilton, Ontario
임차료	○ N/A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Economic Development Team, City of Hamilton ○ 담당자: Mr. Glen Norton ○ 전화: +1-905-546-2424(내선번호 5780) ○ 이메일: 웹사이트 내에서 문의 가능 ○ 홈페이지: https://investinhamilton.ca

비고	○ 해밀턴 내 8개의 산업단지를 운영 중이며, 첨단제조업, 농업, 식품가공, 금융, ICT 등 발달
-----------	---

○ London Industrial Park

규모	총 200만 m ²
위치	London, Ontario
임차료	○ C\$ 16~21/m ² (협상 가능)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London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 담당자 : Ms. Brittany Maia ○ 전화 : +1-519-661-4545 ○ 이메일 : info@ledc.com / bmaia@ledc.com ○ 홈페이지 : https://www.ledc.com/
비고	○ 총 3개의 시 정부 관할 공단이 운영 중이며, 자동차조립·부품, 플라스틱, 기계, 식품가공, 인쇄, 의료기술 등 발달

○ Welland Industrial Park

규모	300만 m ²
위치	Welland, Ontario
임차료	○ C\$ 14~15/m ² (협상 가능)
관할기관 및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Economic Development Office, City of Welland ○ 담당자 : Mr. Dan Degazio ○ 전화 : +1-905-735-1700(내선번호 2111) ○ 이메일 : edc@welland.ca ○ 홈페이지 : www.welland.ca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정부 관할 공단으로 미국 국경과 1시간 내 인접 ○ 도로, 철도 및 항만 시설 등 교통 요지

○ Vaughan Industrial Park

규모	2,765만 5,831 m ²
위치	Vaughan, Ontario
임차료	○ 소유주와 계약으로 매수, 임차 가능

<p>관할기관 및 연락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Economic & Cultural Development Dept., City of Vaughan ○ 담당자 : Ms. Shirley Kam ○ 전화 : +1-905-832-8585(내선번호 8874) ○ 이메일 : edc@vaughan.ca / shirley.kam@vaughan.ca ○ 홈페이지 : www.vaughan.ca
<p>비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토 서북쪽에 인접해 교통, 통신 등 기반시설이 발달된 공업지역.

<자료원 : 각 산업단지 홈페이지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주요 지역별 여건

○ 온타리오 주

- 면적: 1,076,395km²
- 인구: 1,473만 명
- 주도: 토론토(Toronto)
- 주요 산업: 제조업(자동차 및 부품), 농업, 산림업, 광업, 서비스업
- 비고: 캐나다 전체 GDP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경제, 산업 중심지. 세계 5대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 모터스, 포드, FCA, 혼다, 도요타와 트럭 제조사인 히노가 소재해 있으며, 13개의 완성차 및 엔진 생산공장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정부는 온타리오 주의 토론토를 '제2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8년 토론토에 인공지능 연구센터를 설립해 큰 화제가 되었다.

○ 퀘벡 주

- 면적: 1,542,056 km²
- 인구: 857만 명
- 주도: 퀘벡 시티(Quebec City)
- 주요 산업: 제조업(항공 우주), 전력생산업, 광업, 제지펄프업, 서비스업
- 비고: 프랑스계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쓰이며, 캐나다에서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유일한 주로 캐나다에서 가장 넓은 주이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곳임. 몬트리올은 캐나다의 항공 우주 산업의 주요 중심지이며, 벨 헬리콥터 텍스트론, 봄바디어 에어로스페이스, 플랫폼 앤드 휘트니 캐나다와 롤스로이스 캐나다와 같은 항공 우주 회사들이 소재해 있다.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면적: 944,735km²
- 인구: 515만 명
- 주도: 빅토리아(Victoria)
- 주요 산업: 임업(연목재), 농업, 건축업, 어업, 수산양식업, 제조업, 첨단산업, 관광업
- 비고: 북미시장과 아시아-태평양시장에 용이하게 진출할 수 있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음. 북미주 태평양 연안의 최대 항구인 밴쿠버 항이 소재해 있고, 자연경관(국립 및 주립공원 600개)이 수려하여 관광산업이 발달해있음. 또한 천연자원의 세계적인 공급원으로, 임산물(캐나다 목재생산의 69%), 수산물, 에너지,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음. 최근에는 온타리오와 퀘벡 주와 함께 테크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중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43,835.97	36,055.87	26,521.53	43,459.04	50,331.89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5	2016	2017	2018	2019
67,440.31	69,506.62	78,348.01	49,879.46	76,602.18

<자료원 : UNCTAD Stat>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8	103	26	1,802,888	150	524,039
2019	113	30	4,681,591	168	1,162,316
2020	50	15	1,387,485	82	1,687,755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16	0	1,238,768	41	264,683
제조업	31	5	40,565	37	29,36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1	39,852	4	39,852
건설업	2	1	75,228	2	75,116
도매 및 소매업	11	4	5,387	8	5,125
운수 및 창고업	1	0	57	0	0
숙박 및 음식점업	3	2	542	3	542
정보통신업	10	4	2,851	12	1,199
금융 및 보험업	5	4	318,899	11	21,409
부동산업	9	2	54,018	10	56,59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3	7,401	19	10,954
교육 서비스업	1	0	543	1	5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0	18,777	2	18,652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9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20	0	339,096	35	293,918
제조업	19	6	431,243	37	422,33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8	0	2,371,114	4	10,380
건설업	1	0	40	1	30
도매 및 소매업	12	6	47,114	13	46,230
운수 및 창고업	1	0	75	2	45
정보통신업	19	2	9,012	6	5,579
금융 및 보험업	10	6	551,486	35	328,485
부동산업	11	4	864,488	10	48,07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3	67,239	17	6,76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	1	376	1	1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2	308	7	30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20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광업	8	0	93,170	7	17,354
제조업	7	2	13,031	10	4,58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1	491,552	10	1,254,420
도매 및 소매업	6	3	1,672	14	1,962
금융 및 보험업	13	3	627,633	24	211,841
부동산업	8	4	106,108	10	185,08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	1	54,073	6	12,504
교육 서비스업	1	1	246	1	7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 대한항공

진출연도	197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항공운송
모기업명	대한항공

○ 금호타이어

진출연도	197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자동차 타이어
모기업명	금호타이어

○ 포스코

진출연도	1982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석탄광산개발
모기업명	포스코

○ KEB 하나은행

진출연도	198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여수신, 수출업, 외환업
모기업명	하나은행

○ 현대종합상사

진출연도	198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상사
취급분야	철강, 기계, 중장비
모기업명	현대종합상사

○ 현대자동차

진출연도	198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판매 및 수리 서비스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LG전자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가전, 휴대전화
모기업명	LG전자

○ 삼성전자

진출연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가전, 휴대전화
모기업명	삼성전자

○ 한국관광공사

진출연도	1990
진출형태	지점
업종	공공행정
취급분야	관광진흥
모기업명	한국관광공사

○ 한국타이어

진출연도	199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판매, 서비스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 기아자동차

진출연도	199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자동차판매 및 수리 서비스
모기업명	기아자동차

○ 농심

진출연도	2002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가공식품
모기업명	농심

○ 범한물류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운송, 물류
모기업명	범한판토스

○ 현대해운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운송, 물류
모기업명	현대해운

○ 삼성물산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
모기업명	삼성물산

○ 신한은행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
취급분야	여수신, 수출업, 외환업
모기업명	신한은행

○ 한화 L&C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주방, 상업용 바닥재
모기업명	한화 L&C

○ 글로벌스캐나다

진출연도	200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자동차 운송 등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현대글로벌비스

○ 한국가스공사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LNG
모기업명	한국가스공사

○ CS윈드

진출연도	2010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풍력 타워제조
모기업명	CS윈드

○ 한국인삼공사

진출연도	2011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인삼 관련 건강식품
모기업명	한국인삼공사

○ 넥센타이어

진출연도	201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타이어 판매, 서비스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 LG생활건강(Fruits&Passion)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장품 등 생활용품
모기업명	LG생활건강

○ 이노션 월드와이드 캐나다

진출연도	201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광고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씨젠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분자진단 시약 및 장비
모기업명	씨젠

○ 현대캐피탈

진출연도	2014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할부금융
취급분야	할부금융
모기업명	현대자동차

○ 현대모비스

진출연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자동차판매 및 수리 서비스
모기업명	현대모비스

○ CJ대한통운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판매법인 및 지점(토론토)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운송, 물류
모기업명	CJ그룹

○ 포스코대우

진출연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철강, 중장비 무역
모기업명	포스코대우

○ 이니스프리

진출연도	2019
진출형태	판매법인 및 지점(토론토)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화장품 등 생활용품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주)

○ LG판토스

진출연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및 지점(토론토, 몬트리올, 밴쿠버)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물류서비스
모기업명	LG상사

○ 파리바게트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판매법인 및 지점(토론토, 밴쿠버)
업종	도소매 유통
취급분야	베이커리 등 식품
모기업명	SPC그룹

○ 허브텍 솔루션

진출연도	202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열화상 감지시스템
모기업명	인터코엑스 네트워크

<자료원 : 각 기업 웹사이트 및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1) 연방법인

- 연방법인은 캐나다 내 모든 주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모든 주에서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하다.
 - 연방법인 설립 시, 상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산 내 자동으로 상호를 대체하는 고유번호(Numbered name)가 정해지게 되는데, 부여받은 고유번호가(예: 123456 Canada Inc.) 상호로 인정된다.
 - 연방 법인 설립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캐나다 혁신과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청하거나 현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한다.
 - 가이드라인: www.ic.gc.ca/eic/site/cd-dgc.nsf/eng/cs06642.html
- 연방법인 및 주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서류접수는 Cyberbahn, ESC Corporate Services와 OnCorp Direct 등의 대행업체를 통해 가능하다.
 - Cyberbahn: www.cyberbahngroup.ca
 - ESC Corporate Services: www.eservicecorp.ca
 - OnCorp Direct: www.oncorp.com
- 별도 특정 상호를 희망할 때에는 캐나다 연방정부 기업상호명 등록시스템인 NUANS에 희망 상호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상호 선택이 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일련번호를 기업명으로 사용하다가 향후 NUANS 시스템을 통해 상호명을 별도 신청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법적 문서(계약서류, 소득세 신고 서류, 법정제출서류 등)에는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또한 연방법인은 기업활동을 희망하는 주마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타리오, 앨버타, 노바스코샤,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에서는 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 그 외의 주에서의 법인 등록 절차 등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위해서 각 주 정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법인설립 대행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 CBSA Form 1: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FRM-1-e.pdf/\\$file/FRM-1-e.pdf](http://www.ic.gc.ca/eic/site/cd-dgc.nsf/vwapj/FRM-1-e.pdf/$file/FRM-1-e.pdf)
 - Initial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First Board of Directors(법인등록주소 및 최초임원 선정 양식) CBSA Form 2: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FRM-2-e.pdf/\\$file/FRM-2-e.pdf](http://www.ic.gc.ca/eic/site/cd-dgc.nsf/vwapj/FRM-2-e.pdf/$file/FRM-2-e.pdf)
 - Corporate Name Information Form(선호기업명 상세설명양식) Form IC3004 :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CNIF-e.pdf/\\$file/CNIF-e.pdf](http://www.ic.gc.ca/eic/site/cd-dgc.nsf/vwapj/CNIF-e.pdf/$file/CNIF-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2) 주 법인

- 기본적으로 주 법인(Provincial Corporation)은 법인을 설립한 주에서만 기업활동이 가능하다.
 - 연방법인과 마찬가지로 주 법인 설립 시 정부 시스템에 의해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 상호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주어진 번호가 기업명으로(예: 123456 Ontario Inc.) 승인된다.
 - 또한 연방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대행기관을 통해 법인 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Cyberbahn: www.cyberbahngroup.ca
- ESC Corporate Services: www.eservicecorp.ca
- OnCorp Direct: www.oncorp.com

○ 특정 상호를 희망하는 경우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제출 전에 Business Name Registration 절차를 거쳐 해당 상호 사용허가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특정 상호를 지정하지 않고 변호기업으로 활동하다가 향후 상호 변경을 신청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법적 문서(계약서류, 소득세 신고서류, 법정제출 서류 등)에는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주 법인을 세운 주 외의 기타 주에서도 사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희망 주 정부로부터 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에 유사 기업명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상호명을 신청해야 한다.

- 주 정부마다 사업등록 관련 산업에 따른 등록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각 주 정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법인설립 대행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 주정부 비즈니스 등록 웹사이트 : <https://www.ic.gc.ca/eic/site/cd-dgc.nsf/eng/cs04578.html>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 BCA Form 1: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116~1/\\$File/07116E.pdf](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116~1/$File/07116E.pdf)

- Consent to Act as a First Director(최초임원 선정 양식) Form 3: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11379E~1/\\$File/11379E.pdf](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11379E~1/$File/11379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 :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지사

○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및 프로젝트 오피스

○ 캐나다 연방·주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해외기업이 캐나다 내 사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 현지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한국회사에 속하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모회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

- 만일 모기업과 동일 기업명이 해당 주에 등록돼 있을 경우, 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이 불가해 해당 이름으로는 지사를 설립할 수 없다.

- 지사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장 임차 등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주의 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취득 필수 제출서류

- Extra-Provincial License 신청양식

- Agent 선정양식

- 기업명 조회 보고서(해당 주 내 모기업명 비등록 증명)

- 모기업 소재국 정부에서 발급된 Certificate of Status(기업명, 설립일, 소재국, 조세 완납 여부 등)

- Cover Letter(담당자,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 외국기업의 지점에는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지점세(Branch Profit Tax)가 최대 25%까지 부과되나 한국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의해 5%의 지점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외국기업 지점은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며, 법정 분쟁 시 캐나다 기업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참고 웹사이트

- 온타리오 주 주외기업법(Ontario Extra-Provincial Corporations Act): www.e-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90e27_e.htm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pplication for Extra-Provincial License(해외기업 지사설립 허가신청서) EPCA Form 1: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065~1/\\$File/07065E.pdf](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065~1/$File/07065E.pdf)

- Appointment of Agent for Service(Agent 임명양식) EPCA Form 2: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064E~1/\\$File/07064E.pdf](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064E~1/$File/07064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연락사무소

'지사' 내용과 동일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 증권거래소에 상장

- 주식회사의 상장에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업 공개 매각(IPO) 방식에는 회계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금융권까지 함께 협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잘 알려진 토론토증권거래소(TSX) 외에도 캐나다증권거래소(Canadian Securities Exchange; CSE)를 통해 기업 공개 매각이 가능
한데, 주로 신생 기업이나 벤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이용하며 2019년 기준 517개사가 상장되었다.

- CSE 상장을 위해선 해당 주의 금융감독기관(Securities Commission)을 통해 사업설명서(Prospectus)를 제출하거나 기 상장기업을
역 인수, 합병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세한 상장 조건 및 절차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ttps://thecse.com/en/about>

유한책임회사

○ 캐나다에서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는 존재하지 않으며, 비슷한 구조로는 유한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LP)가 있다.

- 개인회사, 무한합자회사와는 별도 설립절차를 가지며, 제출양식 중 무한책임 파트너 선언양식(Declaration of General Partners)이
포함된다.

- 2명 이상의 개인, 기업, 혹은 트러스트(이하 파트너)로 구성되며, 1명 이상의 General Partner를 두어 경영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
업 부채와 의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부여하고 1명 이상의 Limited Partner를 두어 파트너 간의 합의된 비율에 따른 소득분배만을 허용한
다.

- 주식회사와 달리 매년 해당 주 정부에 사업소득세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각 파트너의 개인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이 Limited Partners는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만 부채 책임을 가진다.

○ 참고 웹사이트

- 온타리오 주 합자회사법(Partnerships Act): http://www.e-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90p05_e.htm

- 온타리오 주 유한합자회사법(Limited Partnerships Act): http://www.e-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90l16_e.htm

개인사업자

- 외국인 신분으로서 캐나다 내 개인기업 설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개인기업에서 발생하는 이득·손실은 소유자의 무한책임으로 연결되며, 필수 절차인 세금 납부용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 발급을 위해서는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를 서류상에 기입해야 한다.
 - 또한, 캐나다 내 개인기업을 설립하려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및 캐나다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 외국인 신분으로 캐나다 내 기업 설립은 최소 한 명 이상의 캐나다 주소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 내국인과 함께 파트너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 관련 양식 다운로드(개인회사, 무한책임합자회사)

- 개인회사/무한책임 합자회사 등록신청양식 BNA Form 1: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FormDetail?OpenForm&ACT=RDR&TAB=PROFILE&SRCH=&E NV=WWE&TIT=07219&NO=007-07219>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 관련 양식 다운로드(유한책임합자회사)

- 유한책임 합자회사 등록신청양식 Registration Under Partnership/Limited Partnership Form 5: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215~1/\\$File/07215E.pdf](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215~1/$File/07215E.pdf)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 Deloitte(회계법인)

전화번호	+1-416-874-3914
주소	Bay Adelaide East, 8 Adelaide Street West, Suite 200, Toronto, ON, M5H 0A9
홈페이지	http://www.deloitte.com/ca
이메일	yoochung@deloitte.c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정윤영 대표 회계사
비고	종합 회계 컨설팅 법인으로 전세계와 캐나다 주요거점에 지점 운영

- H1 Accounting Inc. (회계법인)

전화번호	+1-647-285-9916
주소	25 Whitburn Cres. Vaughan ON L6A 1M6
홈페이지	https://www.h1accounting.com/
이메일	simonhong@h1accountin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Simon Hong 회계사
비고	온타리오 주 본(Vaughan) 지역에 위치한 회계법인 사무소로 개인 및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 상대로 세금, 부동산,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종합 회계 서비스를 제공

◦ Sang H. Yoon CPA, Professional Corporation (회계법인)

전화번호	+1-416-901-8297
주소	181 Finch Avenue West North York, ON, M2R 1M2
홈페이지	http://planmytax.ca/
이메일	sanghyuk@planmytax.c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윤상혁 회계사
비고	온타리오 주 노스욕(North York) 지역에 위치한 회계법인 사무소로 주로 개인과 기업상대로 세금, 부동산,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종합 회계 서비스를 제공

◦ Borden Ladner Gervais 법무법인

전화번호	+1-416-367-6000
주소	22 Adelaide Street West, Suite 3400, Toronto, Ontario, M5H 4E3
홈페이지	http://www.blg.com
이메일	aharrison@blg.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없음
비고	보유 변호사 수 기준 캐나다 최대 로펌 중 하나로 토론토, 오타와, 밴쿠버, 캘거리, 몬트리올 등 캐나다 주요 지역에 지점 운영 중 (토론토 지역 담당: Andrew Harrison)

◦ DMCL 회계법인

전화번호	+1-604-687-4747
주소	1500 - 1140 West Pender St. Vancouver, BC V6E 4G1
홈페이지	https://www.dmcl.ca/
이메일	syoun@dmcl.c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Steve Yoon 회계사
비고	종합 회계 컨설팅 법인으로 BC주 주요 도시에 지점 운영(밴쿠버, 쉐리, 트라이씨티, 빅토리아 등)

◦ MNP 회계법인

전화번호	+1-403-263-3385
------	-----------------

주소	1500, 640 - 5th Avenue SW Calgary, AB, T2P3G4
홈페이지	https://www.mnp.ca
이메일	Gerald.Kim@mnp.ca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Gerald Kim 회계사
비고	캐나다 대표 종합 회계 컨설팅 법인으로 캐나다 전역 주요 7개 거점지역에 지점 운영. 본사는 앨버타주 캘거리 위치.

○ Kevin Park Professional Corporation (회계법인)

전화번호	+1-416-706-7653
주소	2347 Kennedy Road, Unit 400, Scarborough, ON, M1T 3T8
홈페이지	https://kevinparkcpaoffice.godaddysites.com/contact-us
이메일	kparkcpa@outlook.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有, Kevin Park 회계사
비고	개인, 기업 상대로 세금 및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제공

<자료원 : 각 사 웹사이트>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1) 개요

○ 기본적으로 사업체 철수 및 청산은 세무보고, 임금 완납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철수 및 청산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다.

○ 캐나다 법인이 아닌 해외 법인의 캐나다 지점(Branch)은 각 주 정부에서 사업체 등록을 말소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캐나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Corporations Canada를 통해 법인 청산을 신청해 최종적으로 청산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취득해야 한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 법인 철수 및 청산

- 캐나다 주식회사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이 청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금화(Liquidation)하여 모든 부채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후 잔여 금액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 최종적으로 Corporations Canada에 의해 발급된 청산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취득하게 되면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 취급 일자에 법인은 청산되고 법인으로서의 모든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

○ 현금화 및 청산 신청

- 자산과 부채가 아직 법인의 지배(Control)하에 있는 경우, 법인은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 첫째는 현금화 작업을 우선 완료한 후에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금화가 완료되기 전에 청산을 신청하는 것이다.
- 현금화를 완료하고 청산 절차를 밟는 경우, 법인은 주주의 동의를 얻어 자산 현금화를 통해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채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처리(조기 상황에 대한 수수료 납부, 직원 임금 및 연금 지급, 미납 세금 납부 등)해야 한다.

- 한편, 주주 사이에 차등적인 구조(보통주와 우선주의 구조 및 의결권 비율이 다른 주식)가 존재한다면, 주주의 의결권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각 주주의 그룹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채가 소멸되고 현금화가 완료된 시점에 법인은 Corporations Canada에 정식으로 법인 청산을 신청한 후 청산 증명서(Certificate of Dissolution)를 취득할 수 있다.

- 현금화를 완료하기 전에도 법인은 법인 청산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청산을 신청한 법인은 청산 계획 증명서(Certificate of Intent to Dissolve)를 취득한 후에는 사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없으며, 오직 현금화를 완료하기 위한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다.

- 앞서 언급한 선현금화 후 청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차등적인 주주 구조를 갖춘 경우에는 의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각 주주 그룹의 동의를 얻은 후 현금화와 청산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위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법인은 청산 계획 증명서를 취득하게 되는데 취득 날짜 이후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법인은 현금화를 위한 활동 이외에 모든 사업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 또한 청산 계획 증명서는 법적으로 법인이 영위하던 모든 사업 활동이 중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취득과 함께 채권단과 청산 신청 당시 사업 활동이 행해진 캐나다 각 주에 청산 계획을 정식으로 공지해야 한다.

- 그리고 각 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채무와 법적 책임을 마무리한 후에 주주에게 잔여금을 배분해야 한다.

○ 지점(Branch) 철수

- 지점의 철수는 법인 철수에 비해 신청이 간편하다.

- 지점 설립 시 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한 주에서 사업체 정보 변경(Change of Business Information)을 통해 사업 등록 말소를 신청하면 된다.

3)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률

○ 캐나다 법인의 청산은 캐나다 주식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식회사법의 Section 207부터 Section 228까지 법인의 현금화 및 청산에 대해 다루고 있다.

- 참조 링크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 www.laws-lois.justice.gc.ca/eng/acts/c-44/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 캐나다달러=865.77원 (2020년 10월 평균환율 기준)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4,743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123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11.45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최저임금 - 온타리오 주: C\$ 14.25 (2020년 10월 1일부터 조정됨)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C\$ 14.60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2021년 6월 1일 조정 예정) - 퀘벡 주: C\$ 13.10 (2020년 5월 1일부터 조정됨) - 매니토바 주: C\$ 11.90 (2020년 10월 1일부터 조정됨) - 앨버타 주: C\$ 15.00 - 서스캐처원 주: C\$ 11.45 (2020년 10월 1일부터 조정됨) - 노바스코샤 주: C\$ 12.55 (2020년 4월 1일부터 조정됨) - 뉴브런즈윅 주: C\$ 11.70 (2020년 4월 1일부터 조정됨) -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C\$ 12.15 (2020년 10월 1일부터 조정됨)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 C\$ 12.85 (2020년 4월 1일부터 조정됨) - 유콘 준주: C\$ 13.71 (2020년 4월 1일부터 조정됨) - 누나부트 준주: C\$ 16.00 (2020년 4월 1일부터 조정됨) -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준주: C\$ 13.46 				

<자료원 : 캐나다 정부 (Government of Canada), 캐나다 통계청 (Statistics Canada) (2020년 10월 기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 채용이 결정되면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보내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통 오퍼레터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연봉과 복지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한다면 서명을 해서 보내달라. 이 레터는 일정 기간 당신에게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며 고용계약서도 아니다. 당신과 회사 간에는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의 내용으로 돼 있다. 대부분 고용계약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만약 고용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고용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어 임의 고용관계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보통 계약서 대신 오퍼레터를 이용하고 있다.

근로시간

-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r Code)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정된 최대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기본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수당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수당은 기준 근무수당의 1.5배 수준이다.
- 이는 고용자로 하여 일반작업에 더욱 많은 인력을 고용함과 동시에 근무시간 이외 작업을 위해서는 시간 외 노동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 5시간 연속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최소 30분의 휴식시간(Meal Break)을 제공해야 한다. 휴식시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피 고용자들은 급여(Paid Break)를 지급받게 된다.(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퀘벡 주 등)

휴가

1) 휴일

- 캐나다는 연간 5일의 연방정부 지정 공휴일이 존재하며 주마다 연간 1일 이상의 주 정부 지정 공휴일이 존재한다.
- 연방정부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 이외에 9일의 공휴일을 보장받는데 여기에는 연방정부 지정 5일의 공휴일과 Victoria Day(캐나다의 법정 공휴일, 5월 25일 직전의 월요일), Thanksgiving Day(추수감사절, 10월 둘째 주 월요일), Remembrance Day(제1·2차 세계 대전의 전사자를 추도하는 날, 11월 11일), Boxing Day(크리스마스 직후의 세일, 12월 26일) 등 4일의 공휴일이 포함된다.

2) 휴가

- 1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자들은 캐나다 노동법(Canada Labor Code)에 따라 일반적으로 연간 2주간의 휴가를 보장받는다.
 - 휴가기간은 해당 사업체에서의 근무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5년 연속 동 사업체에서 근무한 피고용자의 경우, 3주간의 휴가 권리가 있다.
 - 휴가를 사용하는 시기는 고용주의 판단 또는 피고용자와의 합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휴가가 시작되기 2주 전에 휴가 가능 여부를 공지해 주어야 한다.
- 휴가비는 피고용자의 연간 총임금(팁 제외)을 바탕으로 계산하며 2주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4%, 3주간의 휴가에 대해서는 6%의 휴가비가 지급된다.
 - 휴가비는 보통 휴가 시작 14일 전에 지급되지만, 때에 따라서 휴가 중 혹은 휴가가 끝난 직후 지급되기도 한다.
 - 단,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 휴가비 지급을 늦출 수 있다.
- 또한, 고용주는 피고용자를 고용한 시점 기준, 10개월 이내에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 코로나 19 관련 휴가 개정안

- 주 정부가 긴급사태를 선포함에 따라 영업장이 폐쇄되며 실직에 놓인 근로자를 위해 주 정부는 지난 5월 29일, 근로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을 한시적으로 개정하였다.
 - 해당 조치를 통해 근로자는 병가, 유급휴가 외에도 무급휴가를 통해 일자리를 보존 받을 수 있으며 주 정부의 비상사태가 해제된 당일 부터 6주 이후까지 개정안은 유효하다.

해고

- 캐나다의 노동법상 다음의 두 가지 사유에 의해 해고할 수 있다.
 - 근로자의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정당한 해고
 - 불경기, 구조 조정, 과잉 인력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 해고
-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경우, 모든 고용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통보기간을 거친 후 해고하거나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일시적인 해고는 무급휴가로 분류된다.
 - 따라서 일시적 해고 13주 이후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하는 퇴직금에 대해 고용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금

○ 퇴직급여의 경우 주마다 다른 기준을 갖고 있어 각 주의 제도를 일일이 소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여기서는 온타리오 주의 제도만을 서술하며 다른 주의 퇴직급여 제도는 각 주 정부 노동부에서 Retirement Pay 또는 Severance Pay를 검색하면 확인해 볼 수 있다.

○ 온타리오 주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아래와 같은 두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한 고용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 근로자의 퇴직이 고용주의 부분적인 또는 완전한 사업 중단으로 발생했고 근로자가 사업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고용주와 고용 관계를 유지했을 경우

- 고용주가 연간 C\$ 250만(약 22억 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불하는 경우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 기업(고용주)이 부담하는 평균적인 의료보험(건강+치과)의 월간 비용은 1가정당 C \$3,521(약 304만 원)이다. 총 연간 평균 의료보험의 20~29% 정도는 피고용자가 지불한다.

- 기업마다 사용하는 의료보험 회사는 상이하며, 건강보험 지원금액 비율 또한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

○ 캐나다 정부는 피고용자의 질병, 산업재해, 임신, 육아, 입양, 직업훈련, 가족구성원의 심각한 질병 발생 때문인 불가피한 휴직 등의 경우를 대비해서 일시적인 재정지원 목적으로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 EI)를 운영하고 있다.

- 고용보험의 재정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납부로 충당되며, 연령제한은 없다.

- 2020년 기준 고용자는 급여의 2.212%, 피고용자는 1.58%를 각각 부담한다.

- 연간 최대 납부금액은 고용자는 C\$ 1,198.90(약 103만 원), 피고용자의 경우 C\$ 856.36(약 74만 원)으로 고용자가 피고용자보다 1.4배 많은 금액을 낸다.

○ 피고용자는 직전 연도에 법적 최소 근무시간(420~70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 수혜대상이 된다.

- 피고용자가 실업상태가 될 경우, 평균납부금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불경기, 구조조정, 과잉인력에 따른 실업 및 대량 해고 등 피고용자의 과실에 의한 실업이 아닌 경우 정규 임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단, 52주간의 정규 노동 시간을 채운 피고용자에 한하며, 수혜 기간은 14주에서 최대 45주까지 가능하다.

산재보험

○ 캐나다 내 기업의 산업재해보험 가입은 의무는 아니며 각 주 정부 규정에 따라 상이하다.

-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에는 각 각 WSIB(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orkSafeBC의 산재보험이 존재한다.

- 온타리오 주 내의 건설, 요식업, 서비스, 농업, 제조업, 운송업 관련 기업들은 반드시 WSIB에 가입해야 한다.

- WSIB 등록 조건에 벗어나는 산업 혹은 직업군은, 은행, 보험, 개인 병원, 노동조합, 여행사, 헬스클럽, 사진작가, 미용사, 박제사, 장의사 등이 있다.

국민연금

○ 캐나다 3대 공립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Canada Pension Plan; CPP)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60세부터 받으면 65세에 비해 할인, 66세부터 받으면 65세보다 할증해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 캐나다 정부는 현재 10.2%인 CPP의 연금 보험료를 2023년까지 11.9%로 올리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보다는 은퇴 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CPP는 연금 개편안을 통해 현재 25%의 소득대체율을 33.3%까지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캐나다의 모든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퇴직, 노동으로 인한 장애, 사망 시 피고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 수준의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CPP로 납부하고 있다.

- 가입대상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인력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자 양쪽 모두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한다.
- 퀘벡 주는 CPP 대신 이와 유사한 Quebec Pension Plan(QPP)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고용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내야 하는 모든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 장애연금 수령자, 연금 수령자는 납부 제외 대상이며 만 7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임금을 받고 있더라도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 납부금액은 피고용자별로 부여되는 코드(Code)에 따라 산출된다.
- 투자 수익 등은 CPP 계산을 위한 임금산정 시 제외되며, 자영업자는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Net Profit)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 납입 금액은 최소 임금과 최대 임금 사이에서 결정되며, 고용주 및 피고용자의 기부율(contribution rate)은 5.10%이고 2019년 기준 1인당 최대 납입금액은 C\$ 2,748.90(약 243만 원)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 5.10%, 피고용자 5.10%의 비용을 고용주가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총 10.2%의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 한편, 퀘벡 주를 제외한 주들은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 개편안은 2019년부터 시행돼 약 C\$ 55,000(약 4,761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추가로 매달 C\$ 7(약 6천 원)씩 납부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 때문에 2025년부터는 연금 지급액이 현재보다 C\$ 4,300(약 372만 원) 증가한 연간 최대 C\$ 17,478(약 1,513만 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관리 유의사항

1) 노동 연령 하한선

캐나다는 노동으로 인해 교육의 의무가 침해당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법률에 명시된 의무 교육 참석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마다 다른 연령 하한선이 적용되고 있으며 채용 시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 고용 지원 프로그램: 캐나다 노동부와 주 정부는 실업자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채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Job Bank(www.jobbank.gc.ca)

- 고용주들이 직접 웹사이트에 채용정보를 공지하는 사이트로, 캐나다 전 지역의 채용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 이력서 작성 방법 및 각종 분야의 직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피고용자 관심 분야 직업을 직접 검색하거나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서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Job Creation Partnerships(JCP, www.servicecanada.gc.ca)

- 인력개발원(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ESDC) 산하 프로그램으로 피고용자들에게 근무 경험 기회를 제공해 채용으로 연결되도록 한다.

- 최근 3년 이내에 실업혜택을 받은 경험이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육아 목적으로 실업상태가 된 노동자가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방법은 해당 지원양식(EMP5209)을 작성하여 가까운 'Service Canada Centre'에 제출하면 된다.

3) 외국인 노동자 고용

외국인이 캐나다 내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민국으로부터 취업비자(Work Permit)를 취득해야 하는데, 동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 먼저 캐나다 인력개발원(ESDC)에서 고용시장 의견서인 LMIA(구 LMA)를 받아야 한다.

LMIA(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란 고용주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인력 채용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음에도 적격 인력을 찾지 못해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입증하는 문서이다.

외국인 고용 및 취업 절차는 기존의 LMA와 동일하나 LMIA 신청비가 C\$ 1,000(약 90만 원)로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퀘벡 주의 경우 별도의 신청 양식(Quebec Acceptance Certificate; CAQ)을 구비해야 한다.

한편 2015년부터 전문인력 이민자들을 상대로 새로운 영주권 신청 방식인 Express Entry가 시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피고용주의 Express Entry 영주권 신청 지원을 위해 LMIA 취득이 필요하지만 직업군마다 LMIA 취득 여부는 다르다.

또한 캐나다 내에는 일시적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The Temporary Foreign Workers)가 있는데 이는 고용주가 짧은 기간에 한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담당 기관이 증빙자료를 심사해 승인하면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 가능 기간은 최대 4년이다.

4) 주재원 입국 및 체류 관련

외국인이 근로를 목적으로 캐나다 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취업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이는 심사결과에 따라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발급되고 연장할 수 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감세 정책 및 산업 지원: 캐나다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각각 다른 세율의 법인세(Corporate Tax)를 부과하고 있다.

1) 주식회사

- 캐나다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주식회사는 캐나다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 법인세는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상장 기업, 그 외 기업(신용조합, 공기업, 일반 보험사 등) 형태의 주식회사에만 적용된다.
 - 자영업자(Self-Employer), 조합(Partnership), 합작회사(Joint Venture), 유한조합(Limited Partnership), 유한책임조합(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의 형태를 골자로 한 기업은 법인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러한 형태의 기업에는 기업 단위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실제 이익 배분 여부를 떠나 기업 내부에서 정한 이익 배분 원칙에 따라 개인에게 기업 이익이 전가됐다고 보고 개인별로 세금을 추징한다.

2) 연방 법인세

-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주식회사의 배당금 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더불어 일반 개인과 마찬가지로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50%의 차익만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 개인소득세와 달리 법인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해놓은 38%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는 10%의 감세 혜택(Federal Abatement)이 적용된다.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에서 창출된 소득에는 추가적인 감세 혜택인 제조업 이윤 세액공제(Manufacturing and Processing Profits Deduction; MPPD)이 적용되어 총 13%의 감세 혜택이 있다.
- 2020년 기준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주식회사(Canadian-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CCPC)의 경우, 과세소득 중 첫 C\$ 50만(약 4억 4천만 원)에 대해서는 19%의 중소기업특별공제(Small Business Deduction; SBD)가 적용돼 9%의 세율만이 적용되고 있다.
 - C\$ 50만 이상의 영업이익에는 일반 과세가 적용된다.
 - 총 38%의 법인세율에서 Federal Abatement의 10% 감세 혜택과 함께 추가적인 제조업 이윤 세액공제(13% 감세 혜택)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15%의 연방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3) 주 법인세

- 주정부는 관할지역 기업의 주 법인세를 징수하며 법인세율은 주마다 상이하다.
- 이중과세율(Dual Tax Rates) 적용
 - CCPC의 과세소득 중 첫 C\$ 50만에 부과되는 저세율(Lower rate)과 CCPC의 C\$ 50만 이상과 일반 주식회사의 과세소득에 적용되는 고세율(Higher rate)로 구분된다.
 - 매니토바 주의 경우 주 법인세가 가장 낮은 곳으로 법인소득 C\$ 5만(약 4,444만 원)까지 0%, 이후에는 12%가 적용된다.
 - 노바스코샤 주의 경우 주 법인세가 가장 높은 곳으로 법인소득 C\$ 50만(약 4.4억 원)까지 3%, 이후 16%를 부과한다.
 - 참고로, 온타리오 주의 경우 법인소득 C\$ 50만(약 4.4억 원)까지 3.5%, 이후 11.5%를 부과하며,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경우 법

인소득 C\$ 50만(약 4.4억 원)까지 2%, 이후 12%를 부과한다.

개인소득세

1) 과세대상 개인

1년에 183일 이상 캐나다에 거주한 경우, 개인 및 캐나다에서 수입을 거둔 모든 외국인은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자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개인의 경우, 기업이 법인세의 형태로 이미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과세표준 배당수익 재조정이 필요하다. 2020년 11월 기준 상장주식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부과를 막기 위해 배당금을 1.38배로 환산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후 세금공제액(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 액수의 15.0198%)을 부여하고 계산함으로써 배당을 재조정해 이중과세를 막는다.

캐나다 내의 국민소유 비상장주식회사(CCPC)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1.18배로 환산해 과세대상소득에 포함한 후 세금공제액(과세대상소득에 포함된 액수의 11%)을 부여한다. 이외에 캐나다에 소재하지 않는 기업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해외 원천과세의 총합)은 개인 소득에 수정 없이 100% 전액 반영한다.

2) 연방 개인소득세

연방 소득세는 소득액에 따라 5개 구간(Tax Bracket)으로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 C\$ 48,535 이하 : 15.0%
- C\$ 48,534 ~ 97,069 : 20.5%
- C\$ 97,069 ~ 150,473 : 26.0%
- C\$ 150,473 ~ 214,368 : 29.0%
- C\$ 214,368 이상 : 33.0%

3) 주 개인소득세

주 개인소득세의 경우, 적용세율과 기준금액은 주별로 상이하다.

○ 온타리오 주

- C\$ 44,740 이하 : 5.05%
- C\$ 44,740 ~ 89,482 : 9.15%
- C\$ 89,482 ~ 150,000 : 11.16%
- C\$ 150,000 ~ 220,000 : 12.16%
- C\$ 220,000 이상 : 13.16%

○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C\$ 41,725 이하 : 5.06%
- C\$ 41,725 ~ 83,451 : 7.70%
- C\$ 83,451 ~ 95,812 : 10.50%
- C\$ 95,812 ~ 116,344 : 12.29%
- C\$ 116,344 ~ 157,748 : 14.70%
- C\$ 157,748 ~ 220,000 : 16.80%
- C\$ 220,000 이상 : 20.50%

4) 개인소득세 산정을 위한 세금 공제(Tax Credit)

모든 개인은 원칙적으로 세금 공제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은 추가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이외에 대학 등록금, 의료비 등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이 있다. 이러한 항목은 불성실 세금 납부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가가치세

1)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

- 캐나다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모든 상품 및 용역에 5%의 세율로 일괄 적용되며 부가 가치세의 특성을 지닌다.
 - GST는 최종 소비자에 의해 지불되지만, 그 징수 및 납부는 판매자가 직접 담당하며 이를 위해 연방정부에 등록(Registr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과세율이 0%에 속하는 품목(수출품, 채소류, 처방약, 농수산물, 농장비 등)은 최종 소비자까지 세금이 전가되지 않지만 판매자의 재화 구매로 포함돼 추정되며, 그 중 일부는 추후에 공제받는다.
- GST 면제 대상
 - 자영업자, 합자회사 또는 일반 회사 중 4분기 동안 연속으로 매출액이 C\$ 3만 이하인 소규모 공급업체
 - 의료, 육아 교육, 국내금융 서비스, 법률자문 등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체

2) 주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PST)

- 상품과 용역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마다 상이하며 앨버타 주와 유콘, 누나부트, 노스웨스트 준주(Territory)에서는 주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3) 통합 판매세(Harmonized Sales Tax; HST)

- 1997년부터 뉴브런즈윅,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노바스코샤 주는 주 판매세(PST)와 상품용역세(GST)를 통합판매세(HST)로 단일화해 부과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온타리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에서도 통합판매세를 시행하고 있다.
 - 주 판매세(8%)와 상품용역세(5%)를 합산한 13%를 HST로 적용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 주 판매세와 상품용역세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거두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 개편된 HST 시스템은 2020년 11월 기준 앨버타, 브리티시 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연방 직속 준주(Territories)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사용되고 있다.
 - 참고로, 토론토무역관이 소재된 온타리오 주의 통합 판매세(HST)는 13%이다. 지역별 상품용역세, 주 판매세, 통합 판매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캐나다소매위원회(RCC, Retail Council of Canada)웹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 링크: <https://www.retailcouncil.org/resources/quick-facts/sales-tax-rates-by-province/#:~:text=There%20are%20three%20types%20of,for%20each%20province%20and%20territory.&text=As%20of%20July%201%2C%202019,from%208%25%20to%207%25.&text=As%20of%20July%201%2C%202016,from%2013%25%20to%2015%25>.

특별소비세

- 연방정부에서 특정상품(유류, 자동차, 보험료)의 소비에 부과하는 세금
 - 유류 : 항공유, 디젤유, 휘발유 등이 해당하며, 리터당 4~11센트씩 부과
 - 자동차 : 저효율 차량에 부과되며, 효율에 따라 C\$ 1,000 ~ 4,000 부과

- 보험료 : 연간 순보험료의 10%씩 부과

기타

1) 외국인 투자가 적용세율 같은 경우 투자 진출 형태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캐나다 내국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법인 주소 및 사업 지역에 따라 주정부에도 개별적으로 주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 o 캐나다 법인(주식회사)

- 캐나다에 주식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한 경우, 국내 일반주식회사로 인정되며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과 납부세액이 결정되고 적용세율도 내국 법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 또한, 내국 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 법인이 해외에서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한편, 내국 설립 해외 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 및 영업망세(Branch Tax)를 징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의 후 사업 특성에 따른 투자 형태별 장단점을 파악한 후 투자 진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

- o 영업망(판매 사무소, 연락소 등의 운영)

- 외국 법인이 캐나다 내에 영업망(Permanent Establishment)을 설립한 경우 캐나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캐나다 내국 법인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다만, 영업망은 캐나다 설립 외국 법인과 달리 해외 납부 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한편, 영업망의 세후 소득 중 캐나다에 재투자(Reinvestment)되지 않고 해외로 송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의 영업망세(Branch Tax)가 징수되는데, 국가 간 조세협약에 따라 세율이 감소되기도 한다.

- 예를 들어, 캐나다 영업망과 미국 법인 간의 세후 소득 이전에는 5% 세율이 적용되며 C\$ 50만(약 4억 4천만 원)까지는 영업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납세방법

- o 캐나다 내국 법인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 설립된 외국 기업의 법인(Corporation)과 영업점, 사무소, 연락소 등 모두 캐나다 국세청의 T2 양식에 따라 소득 신고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외국 기업이 캐나다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T2 양식을 활용해 일반 캐나다 법인과 같은 절차로 세무 신고를 하게 되지만, 영업망의 경우 T2 양식 첫 페이지의 80번 항목에서 No를 선택한 후 Schedule 97을 별도로 작성해 T2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참고 자료

- T2: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2.html>

- Schedule 97: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forms/t2sch97.html>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 캐나다는 1990년 6월부터 시장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식적인 외환규제는 없지만 환율은 국내 금융정책과 연계해 관리된다.
 -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환율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Bank of Canada)의 기준금리 조정, 국채 매매 등의 정책적 조치가 있기도 하다.

외환 규제

- * 상기 내용(외환제도 개요)과 같이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식적인 외환규제는 없다. (이후 변동사항 없음으로 2020년 11월 기준 최신 자료임.)

9.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캐나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영역은 법률과 관련 판례를 통해서 정해진다. 지식재산권 법률은 연방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산업디자인법, 집적회로 설계도법(Integrated Circuit Topography Act) 및 식물육성자권법(Plant Breeders' Rights Act)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캐나다 법원은 지식재산권 법령의 주요규정에 대한 해석례, 즉 판례를 다수 축적해 왔으며, 보통법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법원의 판례 역시 지식재산권의 법원(法源)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캐나다 특허법상 보호대상은 “발명”인데, 우리의 특허법이 발명의 정의를 두면서, 별도의 등록요건을 두는 것에 반하여, 캐나다의 특허법은 보호대상인 발명을 새롭고 유용한 것 내지 개량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① 발명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 유용하고, ③ 새로우며, ④ 비자명한 것이어야 한다.

디자인은 산업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되는데, 산업디자인은 “완제품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의 특징 또는 이러한 특징의 조합이며, 시각적으로 또는 시각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특허와 달리 자동으로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 등록공보가 발행된다. 산업디자인권은 공보 발행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

캐나다에서는 상표 등록출원에 있어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표장에 대한 실체적 권리는 사용을 전제로 하며, 우리나라와 달리 상표 등록 전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원 상표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용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가능하므로 영구적인 권리일 수 있다.

IV.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한 가정이 1년 동안 지출하는 평균 소비액은 약 C\$ 6만 3,723(약 5,517만 원)이다.
- 가정의 소비지출의 12%는 서비스, 41%는 재화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교육, 세금 등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에 대한 소비지출의 17%는 비(非) 내구성 소비재, 24%는 내구성 소비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자동차 구입이다. 캐나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소비 패턴을 보인다.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의류 등의 품목보다는 연극, 오페라 관람 등의 문화생활이나 골프와 스키 등 각종 스포츠 및 여가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소비 성향

- 각기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사회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에 따라 다른 소비패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투자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홍콩계 중국인들은 주택이나 사업체, 명품, 자동차 구입 등 고액의 투자를 요하는 부문에서 활발한 소비활동으로 캐나다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캐나다의 연중 최대 소비 시즌은 크리스마스, 부활절(Easter Day, 4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0월 셋째 주) 등이다. 이 기간에 많은 소비자가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소비를 한다. 계절 막바지에 소비재나 가구, 가전용품 등의 세일 기간에도 구매가 증가한다. 매년 9월 초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Back To School' 세일 기간은 1년 중 학생용품의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부터 12월 말(또는 1월 초)까지 'Boxing Week Sale'이 계속되는데 상당수의 도소매 기업들이 구 모델이나 재고상품 등을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의 세일을 실시해 많은 소비자가 필요한 제품을 이 기간에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소매업체의 경쟁심화와 함께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Black Friday의 캐나다 유입으로 11월 말부터 세일 슬로건을 내걸고 할인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연중 내내 판촉세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편이다.
- 주요 바이어들은 주로 1년 중 판매시장이 가장 한산한 2월에 공급기업들과의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섬유류와 같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계절별로 구매 계약이 이뤄지지만, 소량주문을 위주로 하는 기타 일반 소비제품은 1년 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캐나다 소비자들은 저가 제품보다는 튼튼하고 기능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물건을 구매할 때 캐나다 소비자들은 정시배달과 확실한 A/S를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대부분의 내구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품질보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 캐나다 유통 시장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형마트의 영향력이다. 최근 몇 년간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닌 대형 마트를 통해 유통되는 저가 상품들이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소비재의 유통은 식품류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대형 백화점들이 주도했지만 최근 들어 대형할인매장들과 "Big Box" 소매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할인매장의 인기는 더욱 증가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Private Label(PL) 상품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1) 냉장고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은 텔레비전, 휴대전화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냉장고는 물론 식기세척기, 세탁기, 에어컨 등의 판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대형 가전제품 전문업체 Lowe's에서 판매 중인 삼성과 LG 냉장고의 경우, C\$ 798(약 71만 원)부터 C\$ 4,598(약 409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고 고급 사양의 제품은 다른 외국 기업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Whirlpool, GE, Maytag, Siemens 등 외국 브랜드 제품에 비해 한국산 제품은 다양하고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자동차

- 2019년 기준 캐나다 자동차 시장은 전년보다 3.6% 감소한 191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7%, 4%로 캐나다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6위, 8위를 차지했다. 승용차 & SUV 부문에서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18년) 각각 4.2%, 5.0% 증가했다.

3) 스마트폰

- 2019년 기준 한국 브랜드의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LG는 8%를 기록했다. 캐나다 내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41%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시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이다.

4) 인스턴트 면 요리

- 아시아계 이민 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유의 매운맛과 더불어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 및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라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은 봉지 포장과 플라스틱 용기 포장 두 종류로 출시되고 있는데 농심의 경우 2019년 기준 면 부분 시장 점유율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월마트, Loblaws, No Frills와 같이 현지인에게 인기가 높은 유통매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유통소매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품군을 구비하고 있어 기존 인기 라면과 함께 새로운 제품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5) 한류동향

- 2000년대부터 아시아계 이민 인구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 한류 문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은 이를 전문적으로 상품화해 판매하거나 캐나다 현지 방송국에서 한국으로부터 판권을 구입해 방영해주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2016년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서 방영한 인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은 시즌 1에서만 93만 명의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김씨네 편의점'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표방하는 캐나다 내 한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기에 힘입어 2020년 1월에는 시즌 4가 방영됐다.

- K-Pop, K-Beauty, K-Food 등 한류 콘텐츠가 캐나다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Pop 아티스트들은 토론토, 밴쿠버 등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4대 영화제로 알려진 토론토 국제영화제(TIFF,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는 이병헌, 황정민 등 한국 유명배우와 감독이 방문해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 2019년 4월에는 블랙핑크 단독 콘서트가 온타리오 주 해밀턴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단기간에 티켓이 매진되었다. 또한, 2011년 이

후 토론토에서는 한국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이 마련되었는데, 2018 이후로는 '극한직업', '신과함께2', '악인전' 등이 상영됐다. 이외에도 2019년 7월에는 토론토 한국 영화제(Toronto Korean Film Festival)가 개최되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바이어 접촉

○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바이어 접촉 시 팩스나 이메일로 간략한 회사 및 제품소개 등을 보낸 후 “관심 있을 경우 연락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접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캐나다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캐나다에서는 각종 광고물이나 스팸 메일 등이 수시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 등은 직접 우편으로 주고 받고 있다. 또한, 유선접촉 시 직접 전화 응대를 하지 않고 리셉션을 통하거나, 자동 응답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명, 직함, 소속, 용건 등을 음성사서함에 정확히 남겨야 한다. 또한, 바이어들을 처음 접촉할 때 필요한 것으로는 영문 카탈로그, 회사와 제품소개서, 가격표, 영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샘플 등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무역 사절단 등의 행사가 화상 상담회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바이어와의 화상 미팅 시간을 엄수할 필요가 있다.

2) 신속한 회신

○ 캐나다 바이어들이 한국기업에 대해 가장 많이 가지는 불만 사항 중 하나가 답신 지연이다. 수차례의 이메일 또는 팩스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한국기업과 관련이 없을 때에도 편지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내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 관계 수립에서 매우 유리하다.

3) 품목 설명

○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수성 및 주요 기업 납품사례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정중하고 신중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바이어에게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감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역원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가급적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 설명 품목이 맞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상세하게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을 기록해 향후 비즈니스 관계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최소 주문

○ 한국 기업과 캐나다 바이어가 거래를 시작할 때 부딪히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이다. 캐나다 바이어들은 재고 축적의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캐나다 수입업자 중에는 소규모 영세업체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최소주문량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고 제품의 시장성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량주문을 선호한다. 종종 한국 기업이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수출하기를 주장할 경우 협상이 진행되다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가 소량 주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자사의 최소주문량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사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납기일을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계약서 작성

○ 모든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첨가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첨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양식 없이 당사자 간의 협의로 작성되는 내

용으로 사항으로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서는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양사의 합의점을 확인하는 비즈니스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 내 해킹으로 인한 무역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계약서에 대금 송금 절차 등의 프로토콜을 명문화하여 무역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 면담 시 유의사항

○ 바이어와의 면담에서는 참고(보관소)의 유무, 배송방법이나 통관절차, 지급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가격정보 외에도 위의 사항들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절하고 객응대를 통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거래를 연결하는 핵심요소이다. 또한, 캐나다 바이어의 경우 캐나다 또는 미국에 위치한 기업의 추천(Reference)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므로 회사 소개 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경력과 전문제조 기술 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회사규모, 설립연도, 연간 매출액 등이 명기된 회사소개서를 사전에 준비해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조급함은 금물

○ 캐나다 바이어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별한 불만이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거래선을 쉽게 교체하려 하지 않으며 위험성이 덜한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격 조건만을 보고 거래처를 바꾸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캐나다 바이어들이 통상적으로 거래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미국 바이어들에 비해 2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캐나다 바이어들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품과 회사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구매자-판매자 관계보다는 파트너십 강조

○ 캐나다 바이어들이 대체로 보수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적절한 공략방법을 사용해 쉽게 주문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리 물건을 수입해 팔아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마케팅 방법은 환영받지 못하며, 파트너십(Partnership) 관계를 강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단순히 캐나다에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양자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접근하면 관련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9) 대금 결제 관행

○ 국제무역에 익숙한 많은 캐나다 바이어들은 대부분의 공급업자가 계약 체결 시 L/C나 T/T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나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몇 차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 차례 거래가 성사된 사실만을 근거로 수입기업의 외상거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으므로 미리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캐나다 바이어가 종종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확한 계약서가 없음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와 양자 대화를 통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3자 개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캐나다 현지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불어 수출보험서비스를 이용 피해를 미연에 최소화하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비즈니스 에티켓

○ 캐나다의 사업 에티켓은 다른 선진국들에서 통용되는 에티켓과 유사하다. 사업가들 간에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약속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철칙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에 늦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른 매너로 통용된다. 만약 20분 이상 늦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로 설명하고 약속 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비교적 친절함으로 알려져 있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나이, 결혼 여부, 소득 수준 등)을 자세히 묻는 것은 큰 결례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캐나다 바이어를 만날 때 통역을 동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Hi. How are you? I'm good. Thanks.' 정도의 인사와 기본적인 인사와 자기소개는 영어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인사 방식으로 남성은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성의 경우 친하다면 가벼운 포옹도 가능하다. 보통 악수할 때 캐나다인은 손을 힘주어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도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친근함 혹은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처음 만난 경우, 악수를 하며 인사한 후 명함을 교환하게 된다. 이때 공손하게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는 한국인들과 달리 캐나다인은 명함을 던지듯이 상대방 앞에 내려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쁜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므로 이에 대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 캐나다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두 눈을 쳐다보고 반응을 보이며 경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상사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도 너무 딱딱한 모습보다는 부드러운 어투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화 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사물을 가리킬 때 가운데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해 가운데손가락만을 펴는 행위는 서양에서 매우 상스러운 욕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망각하고 사물을 가리키거나 책자의 내용물을 설명할 때 무의식적으로 가운데손가락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

○ 한편 캐나다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종종 상대방이 공중에서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펴고 V자를 만든 상태에서 아래위로 토끼 귀처럼 까딱까딱하는 제스처를 볼 수 있는데 이는 'Air Quotes' 또는 'Bunny Quotes'라는 제스처로 두 손가락을 인공부호인 따옴표 모양을 만들어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사용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빈정대거나 풍자할 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캐나다에서는 사업 상대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개인적인 친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수락 여부를 답해야 한다. 방문 시 선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꽃, 와인, 자국 기념품 등이 좋다. 방문 후에는 초대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서신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 시 상대방의 복장에 맞추어 입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복장이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금융계,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정장을 완벽하게 갖추어 입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넥타이까지 착용하는 것이 예의이다. 미팅 상대방이 유통 산업 종사자라면 세미 정장 정도 입는 것이 보통이며, 식품업계나 자동차 등 제조업계의 경우 간혹 바이어가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복장에 있어서 다른 산업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바이어들의 성향에 따라 복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처음으로 만나는 미팅의 경우 어느 업종이나 격식을 차려 입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 식사 메뉴를 정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선택을 권하는 것이 예의이나, 만약 본인이 메뉴를 정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이나 기호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각 종교, 민족의 특성에 따라 먹지 않는 음식이 있고 채식주의자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식사자리가 매우 불편해질 수 있다. 특히, 여느 서구 문화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바이어들에게는 한국처럼 한 가지 음식을 주문해 나누어 먹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국 음식을 먹게 될 경우 함께

시켜서 나누어 먹는 것이 괜찮을지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예의이며, 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방문 시기 고려

- 캐나다 방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시기로 3월 봄방학(March Break), 여름 휴가기간, 연말연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겨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강추위와 폭설을 동반하므로 겨울철 캐나다 출장은 기후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12~1월 초에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대부분의 기업체가 장기 휴무에 들어가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여름 휴가시즌인 6~8월에는 대부분의 정부기관, 민간기업, 경제 관련 단체 관련자 등이 2~4주간 휴가를 떠나므로 출장 전 확인이 요구된다. 3월에는 1주일간의 학교 봄방학(March Break)을 맞아 가족을 동반한 휴가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3) 문화적 금기사항

-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사회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이나 농담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캐나다는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국가로, 실제 생활에서 동성연애자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편견과 비하가 섞인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4) 영어자료는 필수, 퀘벡 주 소재 바이어는 프랑스어 자료 선호

- 구매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바이어들에게 회사와 제품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영어로 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지역에 따라 프랑스어 자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몬트리올이 있는 퀘벡 주는 대표적인 불어 사용지역으로 이 지역 바이어들을 접촉할 때에는 프랑스어로 된 자료가 더욱 효과적이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표준 원칙이다.

5)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한 업무 지연

-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추세로, 각 정부기관에 인증, 관세, 수입규제 등 관련해 문의할 경우 답변을 회신받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부서별로 위급한 순위대로 점차적인 사무실 복귀를 진행하고 있다. 2차 확산으로 인해 사무실 복귀 후에도 재택근무 시행이 병행되고 있으므로 정부기관과 업무 시 기한을 넉넉하게 잡고 업무 진행이 필요하다.

- 또한,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주 등에서 2차 확산이 악화됨에 따라 필수 업종 이외의 현지 기업들은 대부분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바이어와 교신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인터코엑스(Intercoax), 열화상 카메라 종합시스템 기술로 토론토 진출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체온측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업이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기술 개발로 북미 시장진출에 성공했다.

허브텍 솔루션(Hubtek Solution)이라는 이름으로 캐나다에 진출한 동 기업은, 스마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신체접촉 없이 일정 거리에서 사람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발열 여부 또한 자동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최근, 토론토 내 사람 방문이 많은 대형 컨벤션센터, 한인교회, 어린이집 등과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설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코로나 19로 인한 뉴노멀시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 기술시장의 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 허브텍 솔루션의 북미 시장 또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 한-캐나다 FTA를 통해 캐나다 시장 적극 공략

K-Beauty 열풍으로 인해 캐나다 소비자들의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인지한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 T사는 캐나다 시장 진출을 위한 각고한 노력 끝에 2014년 첫 수출 길에 올라 시장을 확대 중이다.

캐나다의 대표적인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Sephora)에 입점하였으며, 오프라인 매장을 개점하는 등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했으나, 한국산 화장품에 부과되는 6.0%의 관세율 등 높은 운영비에 대해 늘 고민했다. 얼마 후 한-캐나다 FTA가 발효로 2015년부터 한국특혜관세(KRT)를 적극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T사는 현지 유통업체들과의 중장기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현재 캐나다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여름 A사의 유명 뷰티 브랜드 또한 캐나다 토론토에 3개의 대형 매장을 오픈했으며, 브랜드를 상징하는 수직 정원을 설치해 친환경 자연주의 감성을 표현하여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화장품은 한-캐나다 FTA 발효('15.1.1) 이후 관세혜택을 가장 많이 본 품목 중 하나이다. 한국산 화장품은 기존 관세(6.5%)가 2015년 4.3%, 2016년 2.1% 등 3년 동안 단계적으로 철폐돼, 2017년부터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2019년 한국산 화장품의 對 캐나다 수출은 전년대비 0.6% 소폭 감소한 U\$ 5,784만을 기록했다.

3) 대동공업, 한국 농기계 업계 최초로 캐나다 법인 설립

2019년 7월 18일, 대동공업은 국내 농기계 기업 중 처음으로 캐나다 현지 법인 '대동-캐나다' 설립을 발표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미시소거 지역에 법인을 설립했으며, 글로벌 농기계브랜드 '카이오티(KIOTI)'의 100마력 이하 트랙터를 주력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1993년 북미 현지법인 '대동-USA'를 설립을 시작으로 지난해 북미 시장에서 트랙터 및 운반차의 연간 판매량이 1만 대를 돌파했으며, 올해 '북미 농기계딜러협회(EDA)'가 주관한 '2019 EDA 딜러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골드 레벨 스테이더스'상을 받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미국 법인을 통해 해왔던 영업활동을 캐나다 현지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부품 및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딜러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보다 활발히 영업 마케팅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딜러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해 카이오티 브랜드 충성도 및 선호도를 높이면서 현지에 있는 74개의 딜러망을 최대 100개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약 21,000대 수준인 시장 규모를 연간 2,000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한국과 캐나다의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한국 국민은 캐나다에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 캐나다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 등의 비자면제국의 국적자에게 입국 승인(eTA) 사전 취득을 요청하고 있다.
 - 관광 또는 단기 출장 방문의 경우 eTA 취득 시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심사에서는 체류 기간 중 거주할 곳의 주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전에 호텔, 민박 등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한편, 캐나다는 7월 1부로 코로나19로 임시 중단하였던 전자사전입국심사(eTA)와 임시거주비자(TRV)에 대한 수속 업무를 재개하였다. 하지만 비자를 승인받더라도 국경 봉쇄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비필수목적 입국이 불가능하다.
- eTA 개요
 - 인터넷으로 여권 정보 등을 입력 후 수수료(C\$ 7 / 약 6,100원) 납부
 - 소요기간: 10분 내외(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즉시 확인 가능)
 - 유효기간: 5년 또는 여권만료 일자 중 빠른 날짜까지
 - 활용: 입국 심사 시 eTA 신청에 사용한 여권 제시
 - 홈페이지: 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 1) 외화 반·출입 한도
 - 외국인인 C\$ 10,000(혹은 이에 상응하는 외국환)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캐나다를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C\$ 10,000 미만 휴대 시 신고 불필요)
- 2) 휴대품 면세한도
 - 휴대물품의 정의
 - 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이 상업용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여행자가 개인용 또는 선물용으로 휴대하는 신품 또는 중고 물품이다.
 - 직업용품은 장치 또는 설치가 필요한 기계류는 제외되며, 통상적으로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 주류: 다음 중 단 한 가지 사항만 면세로 반입 가능하다.
 - (모든 주류) 1.14L
 - (와인) 1.5L
 - (맥주류) 8.5L

* 단위당 알코올 도수가 0.5%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이나 맥주의 경우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앨버타, 매니토바 및 퀘벡 주는 만 18세 이상, 그 외 주는 만 19세 이상 이어야 주류 반입이 가능하다.
 - 담배: 아래 모두 면세품목으로 반입할 수 있다.
 -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권연(시가, cigar) 50개비
- 가공담배류 200g
- 흡연에 필요한 관모양의 기타 기구들 200개(tobacco stick)

o 면세한도금액(일반면세기준)

- 해외체류 7일 이상 기준, 면세 한도는 C\$ 800이다.
- 선물의 경우 C\$ 60 이하까지만 면세반입이 가능하다.
- 주류나 담배류, 사업용 물품들은 선물의 범주에 불포함된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Canada)

전화번호	+1-613-244-5010
주소	150 Boteler Street, Ottawa, Ontario, Canada K1N 5A6
홈페이지	http://can-ottawa.mofa.go.kr
비고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 증진 및 외무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공관으로 오타와 소재 긴급 연락처: +1-613-986-0482 이메일: canada@mofa.go.kr

○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oK in Toronto)

전화번호	+1-416-920-3809
주소	555 Avenue Road, Toronto, Ontario, Canada, M4V 2J7
홈페이지	http://can-toronto.mofa.go.kr
비고	영사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관할지역(ON, MB)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을 수행 긴급 연락처: +1-416-994-4490 이메일: toronto@mofa.go.kr

○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oK in Vancouver)

전화번호	+1-604-681-9581
주소	Suite 1600, 1090 West Georgia Street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E 3V7
홈페이지	http://can-vancouver.mofa.go.kr
비고	영사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관할지역(BC, AB, SK, YK, NWT)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 긴급 연락처: +1-604-313-0911 이메일: vancouver@mofa.go.kr

○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Consulate General of the RoK in Montreal)

전화번호	+1-514-845-2555
주소	Suite 3600, 1250 René-Lévesque Boulevard West, Montreal ,Quebec, H3B 4W8
홈페이지	http://can-montreal.mofa.go.kr

비고	영사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관할지역(QC, NB, NS, NL, PEI)과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증진 업무를 담당 긴급 연락처: +1-514-261-4677 이메일: montreal@mofa.go.kr
-----------	---

〈자료원 : 각 기관 웹사이트〉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 캐나다 연방정부(Government of Canada)

전화번호	+1-800-622-6232
주소	2323 Riverside Dr, Ottawa, ON K1H 7X6
홈페이지	http://www.canada.ca/en.html
비고	캐나다의 수도인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 연방정부

○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

전화번호	+1-613-954-5031
주소	235 Queen St, Ottawa, ON K1A 0H5
홈페이지	http://www.ic.gc.ca/eic/site/icgc.nsf/eng/home
비고	캐나다의 산업, 투자, 무역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는 정부부처 이메일: ISED-ISDE@canada.ca

○ 캐나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전화번호	+1-613-957-4222
주소	284 Wellington Street, Ottawa, ON K1A 0H8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c.ca/eng/
비고	캐나다의 법체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는 정부부처 이메일: webadmin@justice.gc.ca

○ 캐나다 외교통상부(Global Affairs Canada)

전화번호	+1-800-267-8376
주소	125 Sussex Drive, Ottawa, ON K1A 0G2
홈페이지	http://www.international.gc.ca/gac-amc/index.aspx?lang=eng
비고	캐나다의 외교 및 통상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정부부처 이메일: info@international.gc.ca

○ 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전화번호	+1-819-938-3860
주소	200 Boulevard Sacre-Coeur, Gatineau, QC J8X 4C6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environment-climate-change.html
비고	캐나다의 환경보호, 기후 예보, 자연유산 등을 관리 하는 정부부처 이메일: ec.enviroinfo.ec@canada.ca

○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전화번호	+1-204-983-3500
주소	140 Thad Johnson Private, Ottawa, ON K1V 0R4
홈페이지	http://www.cbsa.gc.ca
비고	캐나다의 국경, 세관 등 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정부기관 이메일: contact@cbsa.gc.ca

○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전화번호	+1-613-940-8495
주소	333 Laurier Ave W, Ottawa, ON K1A 0L9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
비고	내국세 부과 및 감면 및 징수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각종 정부 보조금 및 세금공제 제도를 관리하는 정부 기관

○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

전화번호	+1-514-283-8300
주소	150 Tunneys Pasture Driveway, Ottawa, ON K1A 0T6
홈페이지	https://www.statcan.gc.ca/eng/start
비고	캐나다의 인구, 자원, 경제, 사회, 문화 등 광범위한 분야의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정부기관 이메일: STATCAN.infostats-infostats.STATCAN@canada.ca

○ 캐나다 특허청(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전화번호	+1-819-934-0544
주소	50 Rue Victoria C-229, Gatineau, QC K1A 0C9
홈페이지	http://www.ic.gc.ca/eic/site/cipointernet-internetopic.nsf/eng/Home

비고	캐나다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부기관 이메일: IC.contact-contact.IC@canada.ca
----	---

◦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전화번호	+1-613-782-8111
주소	234 Wellington St, Ottawa, ON K1A 0H9
홈페이지	https://www.bankofcanada.ca/
비고	캐나다의 화폐,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책은행 이메일: info@bankofcanada.ca

◦ 캐나다 이민부(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전화번호	+1-888-242-2100
주소	235 Queen Street, Level C3 - Suite 005, Ottawa, ON K1A 0H5
홈페이지	https://www.canada.ca/en/services/immigration-citizenship.html
비고	캐나다 비자 발급 및 영주권과 시민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

◦ The Globe and Mail

전화번호	+1-416-585-5000
주소	351 King Street East, Toronto, ON M5A 1L1
홈페이지	https://www.theglobeandmail.com
비고	1844년에 창간된 일간지로, 캐나다 내 최다 독자를 보유한 전국지

◦ National Post

전화번호	+1-416-383-2300
주소	365 Bloor Street East, 3rd Floor, Toronto, ON M4W 3L4
홈페이지	https://nationalpost.com/
비고	1998년에 창간된 일간지로, 다소 보수적인 색채가 특징.

◦ Toronto Star

전화번호	+1-416-367-4500
주소	1 Yonge Street, Toronto, ON M5E 1E6
홈페이지	https://www.thestar.com/

비고	1892년에 창간되었으며 일간지로서는 캐나다 내 최대 독자를 보유 이메일: circmail@thestar.ca
----	--

o CBC News

전화번호	+1-416-205-5808
주소	205 Wellington St. West, Toronto, ON M5V 3G7
홈페이지	https://www.cbc.ca/
비고	캐나다 공영방송(CBC) 뉴스채널 이메일: torontotips@cbc.ca

o CityNews

전화번호	+1-416-599-2489
주소	33 Dundas St. East Toronto ON M5B 1B8
홈페이지	https://toronto.citynews.ca/
비고	캐나다 최대의 통신사 Rogers가 보유한 뉴스채널

<자료원 : 토론토무역관 자체조사>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3214 CA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4.31
2	식품	계란	12개	2.72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9.81
4	식품	쌀	10kg	18.16
5	음료	소갈비	1kg	25.15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1L	0.95
7	주류	맥주(하이네켄)	330ml, 6병	11.31
8	의료	병원진료비(의료보험 X)	1번	56.76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46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46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3.03
12	숙박	중급호텔(3성급) 정상요금(싱글)	1박	150
13	차량	무연휘발유 1L	1L	0.89
14	통신	휴대전화 요금(무제한 전화 및 문자 이용료) * 데이터 미포함	월	26.49
15	통신	인터넷 이용료	월	49.19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11.35
17	의료	의료보험료(4인 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온 타리오 주 기준)	연간	1513.6
18	주택	아파트 임차료(semi-furnished, 토론토 기준)	월간	1892
19	학비	고등학교(9~12학년, 공립, 외국인 수업료)	연간	10973.6
20	임금	대졸 초임(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 급)	연간	49192

<자료원 :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자료>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 캐나다 달러(Canadian Dollar; CAD)는 통상 "\$"로 표기되나, 미국 달러와 함께 명시될 경우 "CAD"로 표기된다. 1캐나다달러는 0.76달러이며 지폐로는 5, 10, 20, 50, 100 캐나다 달러, 주화로는 5센트(니켈), 10센트(다임), 25센트(쿼터), 1불(루니), 2불(투니) 등이 사용되고 있다.

- 주화 중 1센트는 현재 사용되지 않지만, 결제 단위로는 남아 있다.
- 카드결제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결제금액에 반영되며, 현금을 사용할 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결제된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호텔, 은행 등의 공식적인 환전소에서 당일 환율에 따라 수시 가능하다. 관광지 일부 업소, 공항 면세점 등에서는 미화를 받기도 하나 적용환율에서 다소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 이용

일반 상점이나 슈퍼마켓, 시장, 식당, 호텔 등 거의 모든 곳에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식당은 데빗(직불)카드만 허용하고 있어 항상 일정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

나. 교통

교통상황

○ 온타리오 주, 토론토 내에서 사용되는 주요 고속도로는 4개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 북쪽에서 동-서를 연결하는 401번 고속도로, 남쪽에서 동-서를 교차하는 가디너 익스프레스웨이(Gardiner Expressway), 서쪽에서 남-북을 잇는 427번 고속도로, 동쪽에서 남-북을 통행하는 돈 밸리 파크웨이(Don Valley Parkway) 등이다.

- 토론토의 도로는 서울과 달리 직교형이기 때문에 주된 길 이름과 위치만 알아 놓는다면 길을 찾기가 매우 편리하다.
 - 남-북으로 이어지는 도로 중 대표적인 것은 토론토 도심 중앙에 있는 영(Yonge), 서쪽에 있는 배서스트(Bathurst)와 더퍼린(Dufferin), 동쪽에 위치한 베이뷰(Bayview)와 빅토리아파크(Victoria Park)가 있다.
 - 동-서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도로는 업타운에 핀치(Finch), 미드타운에 로렌스(Lawrence)와 에글링턴(Eglinton), 다운타운에 블루어(Bloor)와 던다스(Dundas), 퀸(Queen) 등이 있다.
 - 영국 조사기관 엑스퍼트마켓(Expert Market)에 따르면, 토론토가 북미에서 교통혼잡이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교차로는 영 & 셰퍼드(Yonge & Sheppard), 프론트 & 심코(Front & Simcoe), 레이크 쇼어 & 파크런(Lakeshore & Parklawn), 프론트 & 유니버시티(Front & University), 베이 & 블루어(Bay & Bloor), 유니버시티 & 아델레이드(University & Adelaide) 등이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은 인구의 도심 집중 현상에 반해 도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토론토로 출장 시 토론토 교통국(TTC)이 운영하는 지하철, 버스, 전차(Streetcar)를 이용해 시내와 외곽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지하철 노선은 하나의 남북 노선(Line 1)과 세 개의 동서 노선(Line 2,3,4)으로 총 4개가 있으며, 대다수의 역명은 주요 도로명과 같다. 버스와

전차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다.

- 토론토 대중교통은 현금, 프레스토(Presto), 메트로패스(Metropas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현금 지불 시 TTC 이용 요금은 1회에 C\$ 3.25(약 2,814원)이다. 환승 티켓 (Transfer)을 지참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으로 환승할 수 있으며, 버스 또는 전차 운전기사에게 보여줘야 한다.
 - 참고로 버스나 전차를 먼저 타는 경우, 요금을 지불할 때 기사에게 환승 티켓을 요구하면 발급해 준다.
 - 선불충전 교통카드인 프레스토(Presto)는 토론토 외곽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므로, 외곽지역으로 자주 이동할 경우 매우 유용하다. 프레스토 카드는 온·오프라인에서 C\$ 6.00(약 5,195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소 충전금액은 C\$ 5.00(약 4,329원)이다. 프레스토 카드를 사용할 경우 편도당 C\$ 3.20(약 2,770원)이 소요된다.
 - 프레스토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는 편도당 C \$3.20으로 이용할 수 있고 1일권(C\$ 13.50, 약 11,688원) , 1달권(C\$ 156, 약 135,060원), 1년 정기권(달 C\$ 143, 약 123,805원) 등 정해진 기간 동안 토론토 내에서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패스를 구매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버스

- 토론토의 시내버스는 지하철, 전차와 더불어 토론토 교통국(TTC)에서 운행하는 핵심 대중교통 체계이다.
 - 토론토 교통국은 토론토 전역과 미시사거(Mississauga), 요크(York) 지역 일부에 걸쳐 150개가 넘는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 토론토의 시내버스는 매일 24시간 운행하며, 대부분이 휠체어가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이고, 버스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다.

택시

- 택시
 - 토론토 시내에는 택시 승강장이 없어 한국에서와같이 노상에서 자유롭게 잡을 수 있으며, 호텔 등에서는 콜택시를 부를 수도 있다.
 - 도심을 벗어난 주택가나 교외 지역에서는 노상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어려워 미리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 토론토 택시 기본요금은 C\$ 4.25(약 3,680원)이며 1km당 C\$ 1.75(약 1,517원) 추가 요금이 붙는다.
 - 토론토 및 밴쿠버 등에서 시내 이동 시 대체로 C\$ 20~30(약 1만 7천~2만 6천 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다.
- 우버(Uber) 및 리프트(Lyft)
 - 스마트폰 앱으로 편리하게 차량을 요청하는 우버 및 리프트 이용자들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 이는 일반 택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신용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일반 택시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 차량 공유 서비스의 경우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는 기본요금의 1.8~2.5배의 할증료가 붙으니 차량 요청 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또한, 캐나다는 지역별로 교통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버는 할리팩스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캐나다 내 27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리프트의 경우 현재 토론토의 온타리오 주, 밴쿠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참고로, 밴쿠버의 경우 차량 공유서비스 사용이 불가능했으나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밴쿠버 도심과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버와 리프트 서비스가 도입되었다.

지하철/전차

- 지하철
 - 캐나다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토론토 시의 지하철은 총 4개 노선으로 운행 중이다.
 - 모든 지하철 노선은 완행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급행열차는 따로 없다. 또한, 지하철 역이름은 전철이 경유하는 길이나 지역 이름을 따서 사용한다.
 - 지하철 1호선 영-유니버시티(Yonge-University) 라인은 토론토 영 스트리트(Yonge Street)와, 유니버시티 애비뉴(University Avenue), 스파다이나 로드(Spadina Road)를 경유하는 U자형 노선으로, 1954년 3월 30일에 개통한 30.2km의 중전철이다. 동 노선은 2017년 12월 17일, 셰퍼드 웨스트(Sheppard West) 역에서 번 메트로폴리탄 센터(Vaughan Metropolitan Centre) 역까지 연장되었다.

- 2호선 블루어-댄포스(Bloor-Danforth) 라인은 토론토 블루어 스트리트(Bloor Street)와 댄포스 애비뉴(Danforth Avenue)를 경유하는 동서축 노선으로, 1966년 3월 25일에 개통한 26.2 km의 중전철이다.
- 1985년 3월에 개통한 3호선 스카보로(Scarborough) RT는 토론토 스카보로 지역을 다니는 6.4km의 도시 철도 노선으로, 리니어 모터가 달린 차량으로 운행된다. 스카보로 RT는 2022년에 개통할 에글링턴 경전철과 연결될 예정이었으나, 온타리오 주 정부에서 2호선 블루어-댄포스 라인을 스카보로 센터(Scarborough Centre) 역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혀 이 구간은 앞으로 2호선 블루어-댄포스 선의 일부가 될 예정이다. 참고로 개통은 2026년으로 계획하고 있다.
- 4호선 셰퍼드(Sheppard) 라인은 토론토 셰퍼드 애비뉴(Sheppard Avenue) 동부를 다니는 노선으로, 2002년 11월 22일에 개통한 5.5km의 지하철 노선이다. 이는 토론토에서 가장 짧은 도시 철도 노선이기도 하다.
- 5호선 에글링턴(Eglinton) 라인은 19km의 경전철 노선으로, 2021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25개 역으로 이루어진 이 노선은 15개가 지하역, 나머지 10개 역은 지상 정거장 형식 예정이다.
- 또한, 정부는 셰퍼드 애비뉴(Sheppard Avenue East)와 핀치 애비뉴 웨스트(Finch Avenue West)에도 경전철 사업을 계획 중이다.
- 토론토 교통국은 선로 일부의 건설, 개·보수를 위해 자하철 노선을 일시적으로 폐쇄할 경우에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 중이다.

○ 전차

- 토론토의 전차는 토론토 시내와 온타리오 호가 있는 워터프론트(Waterfront) 근처 지역을 잇는다.
- 2020년 총 10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세인트클레어 웨스트(St. Clair West), 스파다이나(Spadina), 유니언(Union) 역 지하에서 전차와 지하철 간의 환승이 가능하다. 세인트클레어(St. Clair), 던다스 웨스트(Dundas West), 배서스트(Bathurst), 브로드뷰(Broadview), 메인 스트리트(Main Street) 역에서는 지상층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기타 교통수단

○ 렌터카

- 토론토에서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가 있다면 보험 가입 후 차량을 렌트하는 것이 쉽다.
- 다만, 운전자가 만 25세 미만이면 차량 주행가능거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토론토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업체는 AVIS와 Hertz이다.
- AVIS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 위치 : 5990 Airport Road, Mississauga, ON, L5P 1B2, Canada
 - 전화번호 : +1 905-676-1100
 - 영업시간 : 일~토: 6:00~1:00
 - 홈페이지 : www.avis.ca
- Hertz (Toronto Pearson International Airport)
 - 위치 : 6301 Silver Dart Dr #3, Mississauga, ON L5P 1B2
 - 전화번호 : +1-416-674-2020
 - 영업시간 : 일~토: 6:30~1:00
 - 홈페이지 : www.hertz.ca

다. 통신

핸드폰

- 휴대전화는 크게 유심카드 또는 데이터 로밍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시내 통화 시 전화번호 10자리를 그대로 누르면 되나, 외곽이나 장거리 통화를 할 때에는 전화번호 앞에 '1'을 추가로 눌러야 한다.
- 토론토 시내 전화: 전화번호 10자리 (416-XXX-XXXX)
- 미국, 시외전화, 장거리전화: 1 + 지역번호(3자리) + 전화번호(7자리)

- 한국으로 국제전화 시: 011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
-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Collect Call) 전화 시: +1-888-431-5699 → 1번 메뉴

인터넷(와이파이)

○ 토론토와 밴쿠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시내 대부분의 장소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나 팀호튼(Timhortons) 또는 공공도서관같이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유료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설치해 놓은 곳도 많다. 인터넷 연결이 상시 필요하다면, 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하철이나 지하, 엘리베이터 등에서는 통신 연결이 끊기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 대표적인 통신사로는 벨(Bell), 로저스(Rogers) 등이 있으며 각각의 핸드폰/가정용 인터넷 요금은 기업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벨(Bell) : <https://www.bell.ca>
- 로저스(Rogers) : <https://www.rogers.com>

라. 관광명소

○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

도시명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주소	6815 Stanley Avenue, Niagara Falls Ontario Canada, L2G 3Y9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청)
운영시간	N/A
휴무일	N/A
명소소개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이기도 하며, 과거 나이아가라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탐험대가 거대한 폭포로 인해 갈 길이 막혔던 곳이기도 하다. 5대호 중 하나인 에리 호수(Lake Erie)와 온타리오 호수(Lake Ontario)와 연결된다. 폭포는 고트섬(Goat Island)을 사이에 두고 캐나다 폭포와 아메리카 폭포로 나누어지는데 거대한 말굽 모양의 캐나다 폭포가 미국 폭포보다 웅대해 인기가 높고, 매년 많은 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함을 한층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유람선, झ라인(Zipline) 등 다양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으며, 카지노 오락시설, 음식점, 기념품상점 등도 운영되고 있어 온타리오 주의 주요 외국 관광객 유치 지역이기도 하다.
비고	전화: +1-905-356-7521 홈페이지: https://www.niagarafallstourism.com/

○ 개스타운(Gastown)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주소	Suite 210 - 200 Burrard Street Vancouver, BC, V6C 3L6 (밴쿠버 관광청)
운영시간	일~토: 24시간 운영 개스타운 내 위치한 각 상점 운영시간은 매장별로 상이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다운타운 북쪽의 워터(Water) 거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타운으로 기념품 가게나 의류상점, 레스토랑 등이 즐비하다. 개스의 동상과 오래된 증기 시계(Steam Clock)가 이 곳의 명물인데 특히 증기 시계는 15분마다 증기를 뿜으며 기적소리로 캐나다 국가를 연주하여 관광객의 시선을 끌고 있다.
비고	전화: +1-604-683-5650 홈페이지: https://www.gastown.org/

○ 스탠리파크(Stanley Park)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주소	Stanley Park Causeway, Vancouver, British Columbia V6G 1Z4, Canada
운영시간	일~토 : 24시간 운영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밴쿠버의 최고 명소 중 하나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보다 약 10% 정도 더 크다. 공원 안에서 버스를 탈 수도 있으며 자전거를 빌릴 수도 있는데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한다. 공원 안에는 아쿠아리움, 토템폴 등 볼거리가 있다.
비고	전화: +1-604-873-7000 홈페이지: https://vancouver.ca/

○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주소	1661 Duranleau St. Vancouver, BC
운영시간	그랜빌 아일랜드 내 위치한 각 상점 운영시간은 매장별로 상이
휴무일	그랜빌 아일랜드 내 위치한 각 상점 휴무일은 12.25.(크리스마스), 12.26.(박싱데이)이며 1. 1.(새해) 휴무일은 매장별로 상이
명소소개	그랜빌 아일랜드는 공장과 창고가 있던 낡고 오래된 공장지대였지만, 1970년 개조를 통해 다양한 숍과 레스토랑이 들어서며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개성이 뚜렷한 물건을 파는 작은 상점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며, 작은 장신구나 독창적인 공예품을 구입할 수 있다.
비고	전화: +1-604 666-6655 홈페이지: https://granvilleisland.com/

○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

도시명	캘거리(Calgary)
주소	TOL Alberta, Improvement District No. 9, Calgary, AB
운영시간	4월 1일 ~ 5월 16일: 9:00~17:00 5월 17일 ~ 9월 30일: 8:00~18:00 10월 1일 ~ 3월 31일: 9:00~17:00
휴무일	연중무휴

명소소개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국립공원으로, 1885년 캐나다 최초로 국립공원으로 지정. 끝없이 이어지는 빙원 산맥과 협곡, 호수 등이 절경을 이루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을 유치. 캐나다 최고 관광명소이다.
비고	전화 : +1-403-762-1550 홈페이지: https://www.pc.gc.ca/en/pn-np/ab/banff

○ 켄싱턴 시장(Kensington Market)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Kensington Ave, Toronto, ON M5T 2K2
운영시간	일~토: 24시간 운영 켄싱턴 시장 내 위치한 각 상점 운영시간은 매장별로 상이
휴무일	매년 12.25.(크리스마스) 및 1. 1.(새해)
명소소개	토론토를 대표하는 시장 중 하나로, 2006년 캐나다 역사 유적지(National Historic Site of Canada)로 지정됐다. 이곳은 1920~1930년대에 유대인 시장이었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중남미, 소말리아, 수단, 이란, 베트남 등 정치적 난민 출신 이민자들이 새롭게 자리 잡았다. 현재는 카리브해, 유럽, 남미, 중동, 아시아 각지의 제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서면 토론토의 다문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비고	전화: +1-416-323-1924 홈페이지: http://kensington-market.ca/

○ CN 타워(CN Tower)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301 Front St W, Toronto, ON M5V 2T6
운영시간	일~토: 08:30~23:00
휴무일	매년 12.25.(크리스마스)
명소소개	온타리오 호수 위에 우뚝 서있는 CN 타워는 토론토의 랜드마크다. 1976년 완공된 CN 타워의 높이는 553m로, 2009년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와 중국의 광저우 타워 건설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였다. 타워 입장료를 내고 346m 높이에 있는 유리 마루 야외 전망대로 올라오면 미국으로 연결되는 온타리오 호수와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세인트 로렌스 강을 비롯해 시내 모든 곳을 내려다 볼 수 있다. 밤에는 아름다운 토론토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447m 전망대에도 오를 수 있다. 이 전망대에서 는 맑은 날이면 토론토에서 126km 떨어진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조망할 수 있다.
비고	전화: +1-416-868-6937 홈페이지: https://www.cntower.ca/intro.html

○ 토론토 아일랜드(Toronto Islands)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1 Centre Island Park, Toronto, ON M5J 2E9

운영시간	여름(5월 중순~9월 초) 페리 운영 시간 - 월~금: 8:00~23:45 - 토~일, 휴일: 8:00~23:45 (평일보다 운영 횟수 적음) 겨울 페리 운영시간은 월별로 상이, 상세내용은 웹사이트 참고(www.toronto.ca/explore-enjoy/parks-gardens-beaches/toronto-island-park/all-ferry-schedules/)
휴무일	매년 10월 말 / 11월 초~4월 중순
명소소개	다운타운 최남단의 호숫가에서 10분 정도 여객선을 타고 가면 인공 섬인 토론토 아일랜드에 도착하는데, 시대의 변천에 따른 도시의 모습을 모방해 놓은 공원과 자전거로 하이킹하기에 좋은 산책로,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잔디밭과 해변 등이 있다.
비고	전화: +1-416-392-8193 홈페이지: https://www.torontoisland.com/

○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Art Gallery of Ontario)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317 Dundas St W, Toronto, ON M5T 1G4
운영시간	토, 일: 10:30~17:30 화, 목: 10:30~17:00 수, 금: 10:30~21:00
휴무일	매주 월요일
명소소개	토론토 다운타운에 위치한 온타리오 아트 갤러리는 1900년에 개장한 사설 미술관으로 현재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주요 미술관이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7명의 화가들(Group of 7)의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외에도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등 유럽 대표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중세시대부터 르네상스, 현대 미술까지 약 9만 점 이상의 다양한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을 선정해 보이는 특별 전시회가 개최돼 많은 관광객들 및 문화인들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비고	전화: +1-416-979-6648 홈페이지: https://ago.ca/

<자료원 : 각 관광명소 웹사이트>

마. 식당

- 현지식당

○ 티하우스 인 스탠리 파크(Teahouse in Stanley Park)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전화번호	+1-604-669-3281
주소	7501 Stanley Park Dr, Vancouver, BC
가격	15~45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브런치: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3시 점심: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4시 저녁: 월요일~토요일, 오후 4시-오후 9시
휴무일	연중 무휴
소개	양식(해산물)

○ 르 크로코다일(Le Crocodile)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전화번호	+1-604-669-4298
주소	Suite 100 - 909 Burrard St. (at Smithe), Vancouver, BC
가격	10.5~45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점심: 11:30am-2:00pm 월요일~토요일 저녁: 5:30pm-10:00pm
휴무일	일요일, 공휴일
소개	양식(프랑스)

○ 만다린(Mandarin)

도시명	토론토(Toronto)
전화번호	+1-416-486-2222
주소	2200 Yonge St., Toronto, ON M4S 2C6
가격	18~3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11:30~15:00, 16:30~22:30
휴무일	매년 날짜는 상이하나 1월 중 2일 전직원 회의로 휴무
소개	중식 뷔페

○ 세븐 웨스트 카페(7 West Cafe)

도시명	토론토(Toronto)
전화번호	+1-416-928-9041
주소	7 Charles St. W., Toronto, ON M4Y 1R4
가격	20~3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24시간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양식
----	----

○ 화 상 캔터니즈 시푸드 레스토랑(Hua Sang Cantonese Seafood Restaurant)

도시명	토론토(Toronto)
전화번호	+1-416-596-1628
주소	41 Baldwin St., Toronto, ON M5T 1L1
가격	12~2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11:3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중식 및 해산물

○ 야마토(Yamato)

도시명	토론토(Toronto)
전화번호	+1-416-927-0077
주소	24 Bellair St., Toronto, ON M5R 2C7
가격	15~25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11:30~14:30, 17:00~23:00
휴무일	매년 12.24.(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식사 휴무), 12.25.(크리스마스), 12.26.(박싱데이, 점심식사 휴무), 1.1.(새해, 저녁식사 휴무)
소개	일식

<자료원 : 각 식당 웹사이트>

- 한국식당

○ 이치반(Ichiban Fish House)

도시명	노스욕(North York)
전화번호	+1-416-512-9014
주소	15 Spring Garden Ave, North York, ON M2N 3G1
가격	15~30캐나다달러
영업시간	11:00~22:00
소개	차분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외국인 손님 접대 시 좋음.

○ 대박본가(Dae Bak Bon Ga)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전화번호	+1-604-683-9298
주소	201-1323 Robson St, Vancouver, BC V6E 1C6
가격	15~3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11:00~22: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비빔밥, 된장찌개, 칼국수, 수제비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임. 점심, 저녁으로 고기 및 샤브샤브 뷔페도 즐길 수 있음.

○ 북경반점(Book Kyung Ban Jeom)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전화번호	+1-604-629-8822
주소	1638 Robson St. Vncouver, BC V6G 1C7
가격	10~20캐나다 달러
영업시간	11:30~01: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한인이 운영하는 중화요리점으로, 식사 후 노래방을 일정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 서울관(Seoul House BBQ)

도시명	썬힐(Thornhill)
전화번호	+1-905-709-1593
주소	180 Steeles Ave W, Thornhill, ON L4J 1A1
가격	15~30캐나다달러
영업시간	11:30~23:30
휴무일	매년 1. 1.(새해) 또는 연중무휴
소개	주요 메뉴는 양념갈비와 비빔냉면이며, 단체 손님 접대 시 좋음.

○ 아리수(Arisu Korean BBQ)

도시명	토론토(Toronto)
-----	--------------

전화번호	+1-416-533-8104
주소	584 Bloor St W, Toronto, ON M6G 1K4
가격	15~30캐나다달러
영업시간	11:00~23:00
휴무일	연중무휴
소개	고급 한식 및 일식당으로, 한국 테이블 BBQ로 유명해서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레스토랑임.

<자료원 : 각 식당 웹사이트>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o 호텔 노보텔 노스욕(Hotel Novotel North York)

도시명	노스욕(North York)
주소	3 Park Home Ave, North York, ON M2N 6L3
전화번호	+1-416-733-2929
홈페이지	https://novotel.accorhotels.com
숙박료	177~300캐나다달러
소개	노보텔은 토론토 북부인 업타운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스욕(North York) 역과 연결되어 있다.
비고	부대시설: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실, 시청각 장비 렌탈, 복사 및 팩스 가능

o 더 판 패시픽 호텔(The Pan Pacific Hotel)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주소	300 - 999 Canada Place, Vancouver, BC V6C 3B5
전화번호	+1-604-662-8111
홈페이지	https://www.panpacific.com/
숙박료	239~359캐나다 달러
소개	다운타운 밴쿠버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전망이 멋진 것으로 유명하다. 도보 2분 거리에 캐나다 플레이스 등이 있어 밴쿠버 지역을 관광하기에 좋은 위치를 자랑하고 있다.
비고	부대시설: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실, 스파, 시청각 장비 렌탈, 복사 및 팩스 가능

o 피나클 호텔 하버 프런트(The Pinnacle Hotel Harbourfront)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	----------------

주소	1133 W Hastings St, Vancouver, BC V6E 3T3
전화번호	+1-604-689-9211
홈페이지	https://www.pinnacleharbourfronthotel.com/
숙박료	300~400캐나다 달러
소개	다운타운 밴쿠버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밴쿠버 하버에 인접해 산과 바다 전망이 일품이다. 또한 밴쿠버 컨벤션 센터 등 주요 비즈니스 시설과 캐나다 플레이스 같은 관광명소와 가까운 것도 큰 장점이다.
비고	부대시설: 웨딩,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실, 스파, 바(bar), 복사 및 팩스 가능, 무료 와이파이

○ 리버티 스위트 호텔(Liberty Suite Hotel)

도시명	썬힐(Thornhill)
주소	7191 Yonge #1201, Thornhill, ON L3T 0C4
전화번호	+1-905-604-9400
홈페이지	http://libertysuites.ca/index.html
숙박료	179~550캐나다 달러
소개	썬힐 지역에 위치한 4성급 호텔로,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꾸며진 객실을 가지고 있다. 평점 8.3대로 투숙객들이 선호하는 호텔이며,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과 20.5km 떨어진 위치에 있다.
비고	부대시설: 피트니스, 회의실, 렌터카 서비스, 복사 및 팩스 가능, 스파 시설 구비

○ 메리어트 다운타운 이튼센터(Marriott Downtown at CF Toronto Eaton Centre)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525 Bay St, Toronto, ON M5G 2L2
전화번호	+1-416 -597-92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default.mi
숙박료	299~400캐나다 달러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토론토 시내 중심지인 던다스(Dundas)에 있다.
비고	부대시설: 피트니스, 수영장, 회의실, 시청각 장비 렌탈, 복사 및 팩스 가능

〈자료원 : 각 호텔 웹사이트〉

- 게스트하우스

○ 웨스트 엔드 게스트하우스(Westend Guest House)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	----------------

주소	1362 Haro St, Vancouver, BC V6E 1G2
전화번호	+1-604-681-2889
홈페이지	https://www.westendguesthouse.com/
숙박료	100~150캐나다 달러
소개	현지 관광 매거진이 선정한 밴쿠버 top 20 숙박시설. 스탠리파크와 밴쿠버 다운타운에 인접해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게스트하우스와 달리 다양한 유형, 규모의 방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다.
비고	이메일: contact@westendguesthouse.com

○ 카이저 게스트 하우스(Kaisar Guest House)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372A College Street, Toronto, ON M5T 1S6
전화번호	+1-416-898-9282
홈페이지	http://www.torontoguesthouses.com
숙박료	70~95캐나다달러
소개	이 게스트하우스 주변에는 토론토 대학교, 켈싱턴 마켓 등이 위치해 있고, 스파다이나(Spadina) 역과 가까워 편리한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다.
비고	이메일: torontoguesthouse@hotmail.com

○ 미나스 게스트 하우스(Mina's Guest House)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246-250 Sherbourn Street, Toronto, ON M5A 2S1
전화번호	+1-647-853-6462
홈페이지	http://minaguesthouse.ca
숙박료	78~92캐나다달러
소개	이 게스트 하우스는 토론토 중심지인 던다스(Dundas) 역 근처에 위치해있어 이튼센터 등에서 쇼핑을 즐기기에 편리하다.
비고	이메일: torontoguesthouse@hotmail.com

〈자료원 : 각 게스트하우스 웹사이트〉

사. 치안

치안상황

- 현재 캐나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 중이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12월 1일기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2021년 1월 21일까지 연장 발표하였다.
- 캐나다는 외교교통상부의 여행경보 단계가 미지정된 국가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매우 안전한 편이다.
 - 캐나다의 대도시가 미국의 가장 안전한 지방도시와 비교될 만큼 범죄율이 낮은 편이어서 야간외출, 단독여행, 대중교통 승차가 비교적 자유롭다.
 - 그러나 최근 들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기를 사용한 범죄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미리 우범지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두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 어느 도시나 주로 유흥업소가 밀집된 곳에서 총기사고나 폭행사건이 상대적으로 빈발하는 편이므로 주의를 요하고, 인적이 드문 공원 같은 곳은 해가 진 이후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 또한 캐나다 내 대도시에서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절도 등 경범죄가 지속해서 증가해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바 공공장소나 특히 야간에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 토론토의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지역은 없으나, 야간에 토론토 다운타운 지역의 유흥가 및 던다스 & 셸본(Dundas & Sherbourne), 제인 & 핀치(Jane & Finch), 킬 & 에글링턴(Keele & Eglinton), 핀치 & 알비온(Finch & Albion), 마컴 & 엘리스미어(Markham & Ellesmere) 등의 주변 지역 접근은 삼가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기를 권장한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 폭설 또는 폭우에 따른 교통·통신 두절
 - 캐나다 동부는 폭설에 따라 교통·통신이 끊기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겨울철에는 신문,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겨울철에는 출장 등 현지방문을 삼가는 것이 좋다.
 - 기상이변으로 고립상태가 발생할 경우 이동을 삼가고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야 한다.
- 절도 및 상해
 - 관광객 및 이민인구 급증에 따른 절도·분실, 폭행·상해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 CCTV 설치율이 낮고 화질이 좋지 않아 사후 조치가 느린 편이다.
 - 가급적 야간에는 다운타운 유흥가 등의 출입을 삼가고 이동 시 일행과 동행하는 것이 좋으며, 귀중품은 항상 몸에 소지하고 자동차 등 오픈된 공간에 놓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
 - 절도범을 잡기 위해 뒤따라 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최대한 빨리 범행이 출몰한 곳에서 벗어난 뒤 침착하게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해를 입었을 때 인근에 있는 마트, 상점 등을 방문하여 현지 경찰서에 전화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이나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총영사관이나 대사관으로 연락해야 한다.
 -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신고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 발급이나 여권의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 여권 분실로 재발급 신청 시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 분실 신고서,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가까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가능하다. 비용은 C\$ 65(현금만 가능), 기간은 2~3주가 소요된다.
- 응급 전화번호
 - 경찰서: 911
 - 24시간 응급실(토론토): +1-416-756-6000(North York General Hospital) / +1-416-340-3111(Toronto General Hospital), 밴쿠버 : +1-604-875-4111(Vancouver General Hospital) / +1-604-875-2345(BC Children's Hospital) / +1-604-875-2424(BC Women's Hospital & Health Centre)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1-613-244-5010
 -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1-416-920-3809

-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1-604-681-9581

- 주 몬트리올 대한민국 총영사관: +1-514-845-2555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 주거 여건

- 캐나다는 인구밀도가 낮고 자연환경이 좋아 주거 여건이 매우 양호하다.
-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조차 서울보다 면적은 크나 인구수는 서울의 약 60% 밖에 되지 않는다. 다만, 겨울이 길고 한파가 매섭다는 점은 캐나다에 이민 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치안도 매우 안전한 편이어서 특별히 위험한 지역을 거주지로 선정하지만 않는다면 신변의 위협을 느낄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또한, 토론토나 밴쿠버 등 대도시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많은 이민자가 들어와 동지를 트는 곳이 된다.
- 토론토의 경우 그동안 한국인을 포함한 많은 신규 이민자들은 도심 북쪽에 위치한 노스욕(North York) 지역을 거주지로 선호해 왔는데 이는 도심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지역환경, 상업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신규 이민자들의 정착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노스욕(North York)은 부동산 매매 가격과 임대 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어도 2주 전에 캐나다를 미리 방문해 교통, 학교, 주변환경, 편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주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서부 캐나다의 경우 밴쿠버(Vancouver), 버나비(Burnaby), 코퀴틀람(Coquitlam), 서리(Surrey), 노스밴쿠버(North Vancouver) 지역 등의 광역 밴쿠버 지역이 한국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호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거주지를 선정할 때 지역 학교의 차이를 크게 고려하는 편이다. 특히, 밴쿠버 웨스트사이드(Vancouver Westside)로 불리는 밴쿠버 서쪽 지역은 전통적으로 우수한 학교를 보유하고 있어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다.

○ 관련 참고 사이트

- 캐나다 부동산협회(Canada Real Estate Association; CREA): www.crea.ca
- 캐나다 온타리오주부동산협회(Ontario Real Estate Association; OREA): www.orea.com
- 캐나다 토론토부동산이사회(Toronto Real Estate Board; TREB): www.trebhome.com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부동산협회(British Columbia Real Estate Association; BCREA): www.bcrea.bc.ca

전화

- 전화 개설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대형 쇼핑몰 내에는 전화 개설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 전화 개설 신청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취향과 필요에 따라 이를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 참고로, 국제전화 요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조건을 비교 및 확인해본 뒤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저렴한 국제전화를 제공하는 회사도 많다. 전화·인터넷·케이블 TV 등 통합서비스 패키지를 일괄 신청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이다.

전압/플러그

전압은 110V, 주파수는 60Hz이며 플러그는 2~3구 콘센트이다.(한국의 경우 220V, 60Hz, 2구 콘센트) 현지 변압기 구입 가격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0V 제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변압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다.

식수

물은 가급적이면 생수를 구입해서 마시는게 좋다. 퓨어라이프(Pure Life), 에비앙(Evian) 등 다양한 브랜드의 생수를 슈퍼마켓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 자동차 구입 시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입을 할 것인지 또는 임대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전문가들은 각종 비용을 감안할 경우 자동차를 임대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관련 참고 사이트(신차 구매)
 - Consumer Reports: www.consumerreports.org
 - Autos.ca: www.autos.ca
 - Driving.ca: www.driving.ca
 - Unhaggle.com: www.unhaggle.com
 - 중고차 구매: Autotrader(www.autotrader.ca), Kijiji(www.kijiji.ca)

차량가격

- 시기, 장소마다 자동차의 가격, 부대비용 및 임대 시 적용이율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구입 전 이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 차종별 가격 등은 구매방법의 관련 참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한국과 캐나다는 운전면허 교환협정을 체결해 양국 간 운전면허증 전환이 가능하다.

○ 운전면허증 공증: 재외공관을 방문해 번역서류 및 운전면허증 공증을 받는다. 지참서류로는 한국 운전면허증, 여권, 비자(이민서류)이다.

- 운전면허증 교환
 - 해당 거주지역의 운전면허 등록사무소(Driver Licensing Office)에서 간단한 시력, 청력 테스트 및 문진 등의 절차를 거쳐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 신청 시 지참서류로는 여권, 비자(이민서류), 한국운전면허증 원본 및 번역·공증서류이다.
 - 캐나다 운전면허증은 신청자 주소로 우편발송되며, 운전면허증이 배송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임시면허증을 현장에서 발급해준다
 - 운전면허증은 최초 발급 시 유효기간은 2년이며, 갱신 시 유효기간은 5년이다.
 - 면허증 교환 비용과 절차는 주마다 다르며, 온타리오 주 경우엔 C\$ 90의 비용이 소요된다.
 - 온타리오 주는 한국운전경력(면허증 보유 기간) 2년 이하일 경우엔 시력 검사와 G2 로드 테스트가 필요하며, 테스트 후 G2로 교환된다. 반면, 2년 이상일 경우엔 시력 검사 실시 후 G 면허증(Full License)으로 교환할 수 있다.
 - G1: 16세 이상의 운전자로 시력검사, 필기시험 등에 합격하면 취득할 수 있으며, 운전 시에 조수석에 G 면허증(Full License) 소지자가 필수로 동승해야 한다. 12개월 후 G1 실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운전학원에 다니면 8개월 후 응시할 수 있다.
 - G2: G1 취득 후 12개월 동안 운전 연습이 필요하고 새벽 운전시간에는 제약이 있다. 12개월 후에는 G2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G(Full License) : G1, G2 실기 시험에 모두 통과할 경우 발급받을 수 있는 면허이며, 19세 이상 운전자들에겐 제약이 없다.
 - 온타리오주 운전면허취득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s://www.ontario.ca/page/get-g-drivers-licence-new-drivers>)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 캐나다 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RBC): 1864년 설립된 캐나다 왕립은행은 캐나다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은행이다 (2020.1월 기준). 금융, 투자,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First For You(고객 먼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 2019년 기준 약 8만 5,000여 명의 직원과 1,6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금융 전문지인 더 뱅커(the banker)에서 선정한 1,000대 기업 중 36위로 캐나다 은행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2019.7월 발표)

○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Toronto-Dominion Bank; TD) : TD 은행그룹(TD Bank Group)의 자회사로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두고 있다. 1855년 설립된 토론토은행(Bank of Toronto), 1869년에 창립한 도미니언은행(The Dominion Bank)의 합병을 통해 세워졌다. 2020년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에 따르면, TD 은행은 세계 100대 은행 중 25위를 차지했다.

○ 몬트리올 은행(Bank of Montreal, BMO): 1817년 캐나다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은행으로, BMO 금융그룹(Bank Of Montreal Financial Group)의 계열사이다. 1977년 본사를 몬트리올에서 캐나다 금융의 중심지인 토론토로 이전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 법적인 본사는 몬트리올에 적을 두고 있다.

계좌 개설방법

○ 시중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여권, 사회보장번호(SIN),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편지, 아파트 계약서 등) 등을 구비 해야 한다. 계좌 개설 시 자동현금인출기 사용을 위한 현금카드와 개인 수표를 동시에 발급받게 된다. 캐나다 내에서는 전화요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때 개인 수표를 발행해 우편발송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인 수표 발급은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 Cousteau(The French International School of Vancouver)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커리큘럼	BC주 유일의 프랑스 국제학교로 만3살 ~ 9학년 커리큘럼 제공
학비	문의: info@cousteauschool.org
홈페이지	https://cousteauschool.org/
비고	국제학교의 경우 학비는 학년/입학년도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직접 문의를 통한 확인 필요

○ German International School Toronto

도시명	토론토(Toronto)
커리큘럼	German International School Toronto는 만 3세부터 18세의 학생에게 독일 학교의 커리큘럼 기준과 교육 철학을 철저히 고수하도록 교육 중임.
학비	문의: admissions@gistonline.ca

홈페이지	http://www.gistonline.ca
비고	국제학교의 경우 학비는 학년/입학년도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직접 문의를 통한 확인 필요

○ Lycee Francais Toronto(LFT)

도시명	토론토(Toronto)
커리큘럼	1995년에 설립된 LFT는 만 3세부터 18세를 위한 프랑스식 커리큘럼을 갖춘 토론토 내 유일한 국제학교임
학비	문의: admissions@lft.ca
홈페이지	https://www.lft.ca/
비고	국제학교의 경우 학비는 학년/입학년도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직접 문의를 통한 확인 필요

<자료원 : 각 학교 웹사이트>

- 현지학교

○ St. George School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커리큘럼	1~12학년까지 가르치는 명문 사립 남학교. 1~7학년은 통학, 8~12학년은 통학/기숙을 선택 가능. 각종 스포츠, 다양한 예체능 과목과 체계적인 진학지도반을 운영
학비	문의: info@stgeorges.bc.ca
홈페이지	https://www.stgeorges.bc.ca/page
비고	1930년도 설립된 남학교로써 다양한 국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재학중

○ Appleby College

도시명	옥빌(Oakville)
커리큘럼	Appleby College는 1911년 설립된 캐나다 명문 사립학교. 7~8학년은 통학, 9~11학년은 통학/기숙을 선택할 수 있지만 12학년은 전원 기숙사 생활이 의무. 9~12학년 학생은 AP 과목을 수강 가능
학비	문의: admissions@appleby.on.ca
홈페이지	https://csviamonde.ca/
비고	토론토 도심에서 차로 약 30분 떨어진 옥빌(Oakville)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녀공학 통학/기숙학교

○ Metropolitan Preparatory Academy

도시명	토론토(Toronto)
커리큘럼	Metropolitan Preparatory Academy는 1982년 설립된 명문 사립학교로, 토론토의 부촌인 미드타운(Midtown)에 위치하고 있으며, 7학년부부터 12학년까지 가르치고 있음.

학비	문의: admissions@metroprep.com
홈페이지	https://tdsb.on.ca/
비고	현지학교의 경우 학비는 학년/입학년도 별로 상이하므로 상세내용은 직접 문의를 통한 확인 필요

<자료원 : 각 학교 웹사이트>

마. 병원

○ North York General Hospital

도시명	노스욕(North York)
주소	4001 Leslie Street, North York, Ontario M2K 1E1
전화번호	+1-416-756-6000
진료과목	24시간 응급실

○ Vancouver General Hospital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주소	899 W. 12th Ave. Vancouver, BC V5Z 1M9
전화번호	+1-604-875-4111
진료과목	24시간 응급실

○ University of Alberta Hospital

도시명	에드먼턴(Edmonton)
주소	8440 112 Street NW Edmonton, Alberta, Canada T6G 2B7
전화번호	+1-780-407-8822
진료과목	24시간 응급실(아동병원 포함)

○ Toronto General Hospital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200 Elizabeth Street, Toronto, Ontario M5G 2C4
전화번호	+1-416-340-3131
진료과목	24시간 응급실

<자료원 : 각 병원 웹사이트>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o 퍼시픽 센터 몰(Pacific Centre Mall)

도시명	밴쿠버(Vancouver)
주소	701 W Georgia St, Vancouver, BC V7Y 1G5
홈페이지	https://www.cfshops.com/pacific-centre.html
비고	밴쿠버 3대 쇼핑몰 중 한 곳으로 3개의 블록에 걸쳐 출입구가 8개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큼. 다운타운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 지하철에서 매장 지하로 바로 연결되어 편리

o 욕데일 쇼핑센터(Yorkdale Shopping Centre)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3401 Dufferin St, North York, ON M6A 2T9
홈페이지	https://yorkdale.com/
비고	욕데일(Yorkdale) 역에 위치한 욕데일 쇼핑센터에는 백화점, 서점, 은행, 영화관,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어 쇼핑 이외의 다양한 활동 가능

o 이튼센터(Eaton Centre)

도시명	토론토(Toronto)
주소	220 Yonge St, Toronto, ON M5B 2H1
홈페이지	https://www.cfshops.com/home.html
비고	토론토 다운타운 던다스(Dundas) 역과 퀸(Queen)역 사이에 위치한 이튼센터에는 약 300여 개의 상점이 자리잡고 있음. 이탈리아 밀라노의 빅토리오 에마누엘 2세 갤러리아(Galleria Vittorio Emanuele II)를 본떠 유리 천정과 회랑 구조로 지어졌으며 상점 곳곳에 독특한 장식들이 많음.

<자료원 : 각 쇼핑센터 웹사이트>

- 식품점

o Sobeys

도시명	미시소거(Mississauga)
주소	4980 Tahoe Blvd, Mississauga, ON L4W 0C7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비고	캐나다 내 두 번째로 큰 식품 유통업체로, 2017년 기준 1,500개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

○ Rabba Fine Foods

도시명	미시소거(Mississauga)
주소	5820 Kennedy Rd, Mississauga, ON L4Z 0A8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비고	온타리오 주 내 30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슈퍼마켓임. 대부분의 매점이 시내 아파트 및 콘도미니엄 로비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용이함.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도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이용도가 높음.

○ Loblaws

도시명	브램턴(Brampton)
주소	1 Presidents Choice Cir, Brampton, ON L6Y 5S5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비고	캐나다 최대의 식품 유통업체로, 2,3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이며, 본사는 온타리오 주에 소재하고 있음. No Frills, Shoppers Drug Mart 등 약 30개의 자사를 보유하고 있음.

○ T and T Supermarket

도시명	스카보로(Scarborough)
주소	790 Tapscott Rd, Scarborough, ON M1X 1A2
취급 식료품	아시아계 식품
비고	아시아계 식품 및 소비재를 판매하는 화교계 슈퍼마켓 체인으로, 2009년 Loblaw Companies Limited에 인수됨. T and T는 2000년대에 아시아계 이민자 증가에 힘입어 급격하게 성장했으며 현재 토론토 등 아시아 인구 밀집 지역에 23개의 지점을 운영 중임.

○ Metro

도시명	이토비코(Etobicoke)
주소	5559 Dundas St W, Etobicoke, ON M9B 1B9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
비고	1947년에 설립된 Metro는 캐나다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식품 유통업체임. 온타리오 주와 퀘벡 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T-Brothers

도시명	코퀴틀람(Coquitlam)
주소	100-88 BRIGANTINE DRIVE, COQUITLAM BC, V3K 6Z6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유통 기업

비고	1995년 설립된 BC주 대표 한인식품 유통기업. 한국 식품을 대표하는 김치를 포함해 다양한 제품을 교민사회 및 캐나다 내 대형마트(Costco, T&T, Save on Foods, Fairway 등)에 공급 중
----	--

○ Korea Food Trading

도시명	콘코드(Concord)
주소	8500 Keele St, Concord, ON L4K 2A6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점
비고	토론토 외곽의 번(Vaughan)에 소재한 한국식품 유통 업체로, 한인 교포가 운영 중임. 캐나다 동부 전역 소매점, 식당, 현지 대형 소매체인 등에 한국산 가공식품 및 식자재를 공급

○ Seoul Trading

도시명	포트 코퀴틀람(Port Coquitlam)
주소	#1 1560 Broadway St. Port Coquitlam, BC V3C 6E6
취급 식료품	한국 식품유통 기업
비고	2003년 부터 캐나다내 식품 수입, 수출 및 도매업 개시. 현재 밴쿠버에 오피스와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현지 한인 마켓과 글로벌 식료품점에 한식품 납품

<자료원 : 각 식품점 웹사이트>

- 기타 편의시설

○ 노스뷰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Northview Golf and Country Club)

도시명	써리(Surrey)
주소	6857 168 St, Surrey, BC V3S 3T6
홈페이지	https://www.northviewgolf.com/
소개	1996년에서 2002년 사이에 PGA 투어가 열린 명품 골프장으로, 밴쿠버 서리(Surrey)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Ridge 와 Canal 코스 모두 이용 가능하다. 고속도로와 인접해있어 교통이 편하고 잔디관리도 잘되어있어 관광객,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이다.

○ 세인트 조지 골프 앤드 컨트리 클럽(St. George and Country Club)

도시명	이토비콕(Etobicoke)
주소	1668 Islington Ave, Etobicoke, ON M9A 3M9
홈페이지	http://www.stgeorges.org
소개	2013년 영국 유명 골프 사이트 '탑 100 골프 코스 오브 더 월드(Top 100 Golf Courses of the World)'가 선정한 1위 골프 코스로, 유명한 골프 코스 설계가 스탠리 톰슨(Stanley Thompson)이 디자인했다. 2020년, 2024년에는 RBC Canadian Open 토너먼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원 : 각 편의시설 웹사이트>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새해	2021-01-01	
가정의 날	2021-02-15	가정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날로 주마다 명칭과 기간이 상이함. 브리티쉬 컬럼비아(BC) 주 및 온타리오(ON) 주는 2월 셋째 주 월요일(2월 15일)이 가정의 날로 지정되어 있음.
성금요일	2021-04-02	성금요일은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의 재판과 처형을 기리는 날로 교회들은 별도의 예배시간을 가지며, 일부 교도들은 애도의 표시로 단식을 하기도 함.
부활절	2021-04-05	성금요일이 지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함을 찬양하는 날로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진 달걀을 주고 받는 풍습이 있음.
빅토리아데이	2021-05-24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탄생일(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주 제외)
캐나다데이	2021-07-01	캐나다 건국(1867년) 기념일. 영국 정부로부터 자치권이 인정되면서 캐나다 연방정부는 온타리오, 퀘벡,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주 등 4개의 주를 설립함.
시민의 날	2021-08-02	시민의 날은 매년 8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주마다 명칭이 상이함. 온타리오주에서는 "심코데이(Simcoe Day)"라고 불리기도 하며, 영국으로 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의미도 갖고 있음.
근로자의 날	2021-09-06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된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날. 대부분의 캐나다 국민들은 노동절이 되면 여름이 끝나가는 것으로 인식하여 늦여름의 휴가를 즐기고, 학생들은 새학기를 준비함.
추수감사절	2021-10-11	추수감사절(Thanksgiving)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절기로 온가족이 모여 시간을 보냄. 저녁으로 칠면조, 감자 요리를 포함한 다채로운 요리를 즐기고, 감사 기도를 드림. (뉴브런즈윅, 노바스코샤, 뉴펀들랜드 주 제외)
현충일	2021-11-11	캐나다 현충일은 캐나다 6개의 주 및 3개준주에서 공식 지정한 공휴일로,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캐나다 군인들을 애도하는 기념식 행사가 열림. 양귀비데이(Poppy Day)라고 불리기도 할 만큼 시민들의 왼쪽 가슴위에 꽂힌 양귀비 꽃을 흔히 볼 수 있음. 정부, 은행 등 일부 기관만 휴일이며, 일반 사기업은 대부분 정상 영업함.
크리스마스	2021-12-25	크리스마스는 기독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로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휴일. 대부분의 기업들과 상점이 영업을 하지 않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편적임.

박싱데이	2021-12-26	<p>크리스마스 다음 날로, 많은 영연방 국가에서 성탄 연휴로 정하고 있음.</p> <p>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기부하는 날이었으나, 현대에는 소매상들이 물건 가격을 대폭(50~90%) 할인하여 판매해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쇼핑하는 날로 인식하고 있음.</p>
------	------------	--

<자료원 : KOTRA 토론토 무역관 보유 자료>

9. KOTRA 무역관 안내

토론토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2 St. Clair Avenue West, Suite 800, Toronto, Ontario M4V 1L5
- 전화번호: +1-416-368-3399
- 이메일: info@kotra.ca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toronto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 이용
 - 공항 출구로 나와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기사에게 토론토 시내에 있는 무역관 주소를 알려 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함
 - 공항 택시 요금은 C\$ 57~82(약 5~7만 원) 내외이며, 일반적으로 팁(10~15%)을 포함할 시 총비용은 C\$ 62~86(약 5만 3천 원 ~7만 4천 원) 정도 소요
- 대중교통 이용
 - 공항 출구(Terminal 1)로 나와 UP Express Pearson Airport 정류장에서 열차(직행) 승차.
 - 1인 편도요금은 C\$ 12.35(약 1만 692원)
 - 다운타운에 위치한 Union(Downtown)역에서 하차 후 지하철역(TTC)에서 Line 1 (Finch 방면) 탑승 후 St. Clair역에서 하차
 - 1인 편도요금은 C\$ 3.25(약 2,814원)이며, 안내데스크 또는 무인 발급기에서 승차권 구매 가능
 - 출구를 빠져나와 2 St. Clair Avenue West 8층에 있는 무역관 사무실 도착
 - 공항 열차 운행 시간: 05:27~00:57 (30분마다 운행, 소요시간: 46분)

밴쿠버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Suite 780, 999 Canada Place, Vancouver, British Columbia, Canada, V6C 3E1
- 전화번호: +1-604-683-1820
- 이메일: info@kotrayvr.com
-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KBC/vancouver>

공항-무역관 이동

- 대중교통 이용
 - YVR 공항에서 밴쿠버 다운타운 'Waterfront' 역까지 스카이트레인 이용(약 25분 소요, 총 12개 정류장)
 - Waterfront 역에서 하차 후 Canada Place 방향으로 도보(약 5분 소요)
- 자가용 이용
 - 공항에서 자동차를 렌트한 경우, 교통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40분 소요
 - 주차장은 Canada Place 지하 유료 주차장과 Waterfront역 인근의 (저렴한) 퍼블릭 유료 주차장 이용 가능



국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